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2021년도**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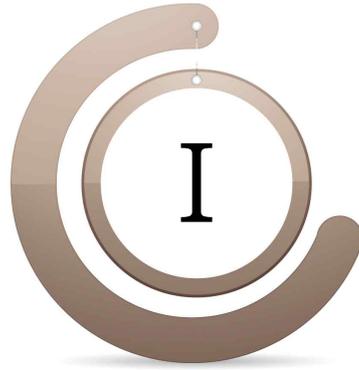
**경상남도**



# 목 차

I. 주요 법령 개정 사항	1
II. 일반사항	19
1. 근거 및 목적	21
2. 점검대상	21
3. 추진방향	21
4. 점검방법	22
5. 점검시기	22
6. 점검업무 처리 절차	23
III. 점검자 업무 요령	25
1. 공정한 업무 수행	27
2.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27
3. 점검업무 수행절차 및 결과 처리	27
4. 건설현장점검 유의사항	28
IV. 수검자의 권리 및 의무	29
1. 수검자의 권리	31
2. 수검자의 의무	31
V. 주요 점검 내용	33
1. 시공분야	35
2. 품질분야	36
3. 안전분야	89
4. 기타분야	125

<b>VI. 건설공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b>	<b>137</b>
1. 공통사항	139
2. 도로	141
3. 하천	156
4. 건축	165
5. 상하수도	169
6. 기타공사(항만·어항시설 등)	171
<b>VII. 벌점제도 운영요령</b>	<b>173</b>
<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75
<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176
<input type="checkbox"/> 이의 신청 등	177
<input type="checkbox"/>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178
<b>VIII.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 요령</b>	<b>195</b>
1. 직접시공 관련사항	198
2. 하도급 제한 관련사항	206
3. 기타	214
<b>부록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b>	<b>224</b>
<b>부록 2. 경상남도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 규정</b>	<b>232</b>



#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1.21., 2020.12.10. 시행)

## □ 개정이유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설계 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간섭 등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 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 교육·훈련의 대행(제20조의2 신설)

⇒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인 육성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신설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20조의3 신설)

⇒ 대행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신설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제20조제4항 신설)

⇒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도록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4항(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신설

제20조제4항(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훈련의 관리(제20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임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신설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제20조의6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6(교육·훈련업무의 위탁) 신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제39조의4 신설)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 침해 배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신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62조의2 신설)

⇒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신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제65조의2 신설)

⇒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 시행을 아니하여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신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 (제84조의2호의2 신설)

⇒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의2호의2 신설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20.5.26., 2021.1.1. 시행)

### □ 개정이유

- 별점을 합산하여 점검 현장 수로 나눈 평균방식에서 별점을 단순 합산하는 합산방식으로 별점의 산정방법을 변경
- 별점 경감제도를 도입,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점의 20퍼센트부터 59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별점미부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0.2점부터 1점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 건설공사 별점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점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 신청절차를 도입

### □ 주요내용

- 이의 신청 등(제87조의2 신설)
  - ⇒ 별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 별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별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 부과 결과를 정정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 신설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 ① 별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별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별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별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 **별점심의위원회(제87조의3 신설)**

⇒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 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신설

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별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별점을 부과한 사유·근거와 별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별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점경감기준(제119조의제3항 신설)**

⇒ 별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9조의제3항(별점경감기준) 신설

제119조의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별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제86조의2 신설)

⇒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신설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제86조의3 신설)

⇒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신설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0.12.14. 시행)

#### □ 개정이유

- 교육·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의 갱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를 정하며,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추가·보완 등

#### □ 주요내용

-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제17조의2 신설)  
⇒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교육·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제17조의3 신설)  
⇒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제17조의4 신설)  
⇒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신설

제17조의2(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훈련의 개발·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3(교육·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0.1. 시행)

### □ 개정이유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대여·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
-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신설 등

### □ 주요내용

- 자격증 대여·알선 등 제재 강화(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제8호 신설)
  - ⇒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 벌칙(제170조의2 신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2항(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신설

#####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70조(벌칙)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대여·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 강화,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21.1.16. 시행)

### □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기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제69조 및 제70조)  
⇒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106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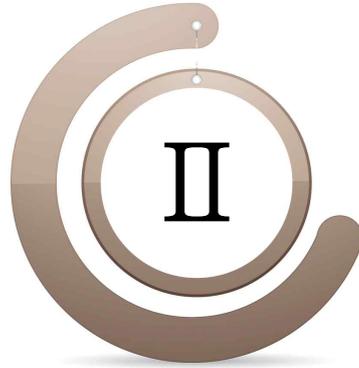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일 반 사 항



## 1. 근거 및 목적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와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2. 점검대상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
  - 도 및 시·군 투자기관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지도·점검 대상으로 한다.

## 3. 추진방향

- 건설공사 품질 확보 및 건설기술향상 도모
  -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으로 공사 품질저하 및 불안전 요인 사전 해소 및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 유도
  -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기술자의 시공관리능력 향상
- 성실시공 풍토 조성 및 우수사례 발굴
  - 시공단계별 품질관리내용, 부실발생시 발주청 조치사항, 건설업자(기술자) 별점 제도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
  - 우수 건설현장 관계자 표창으로 성실시공 분위기 확산

## 4. 점검방법

○ 도 주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4회(분기별 1회)

- 점검반 : 3개반 구성 \* 1개반 : 공무원 1명, 민간전문가 1명
- 총괄 : 건설지원과장
- 점검반장 : 담당사무관
- 점검대상 : 건설기술심의 대상지의 공사규모, 공정률 등 고려하여 선정
- 점검시기 : 4회(3월, 6월, 9월, 11월)

○ 발주청(부서)별 일제점검 : 2회(상·하반기)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청(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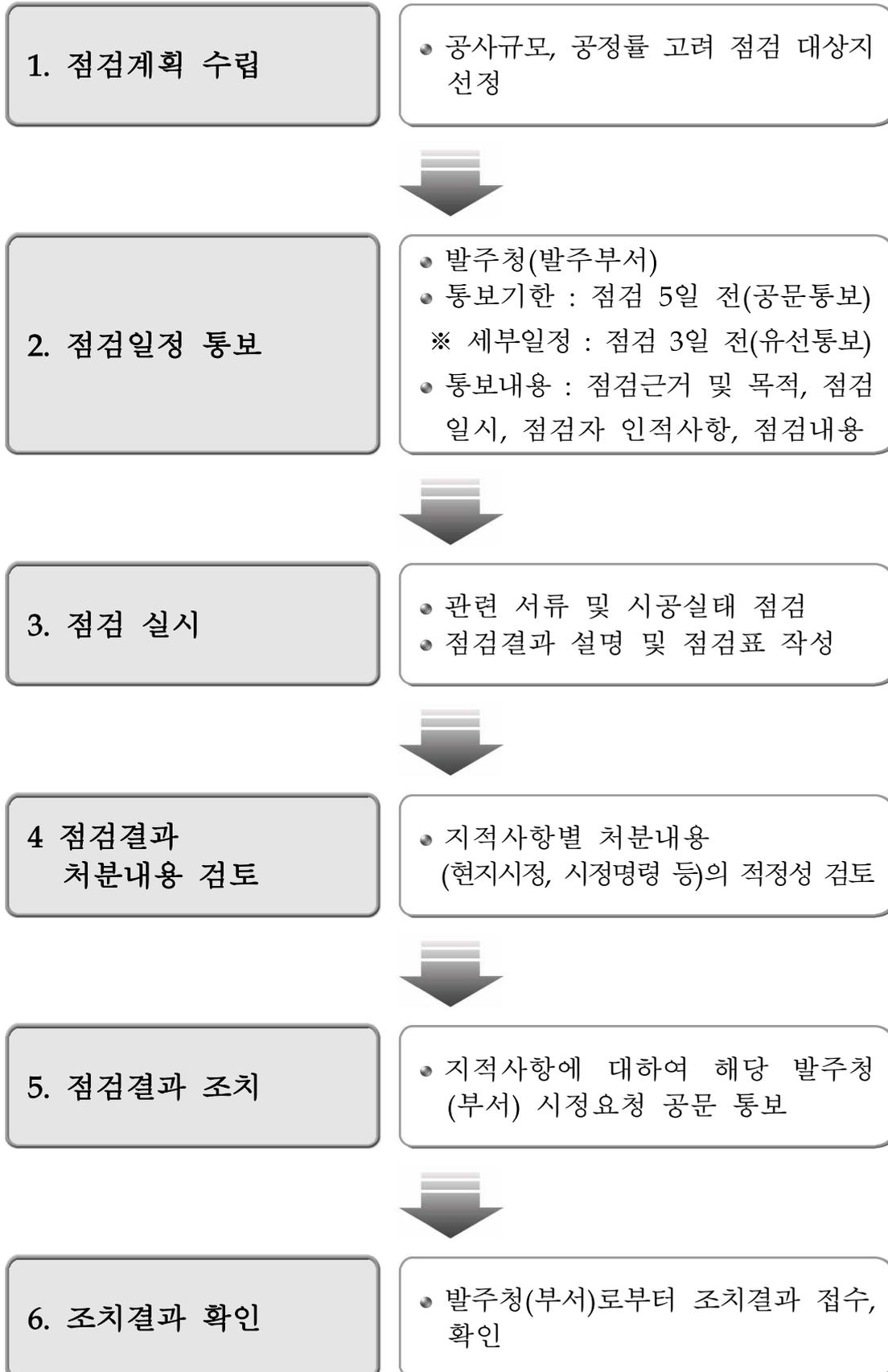
## 5. 점검시기

- 매년 초에 발주청(부서별) 건설공사 현황을 파악하여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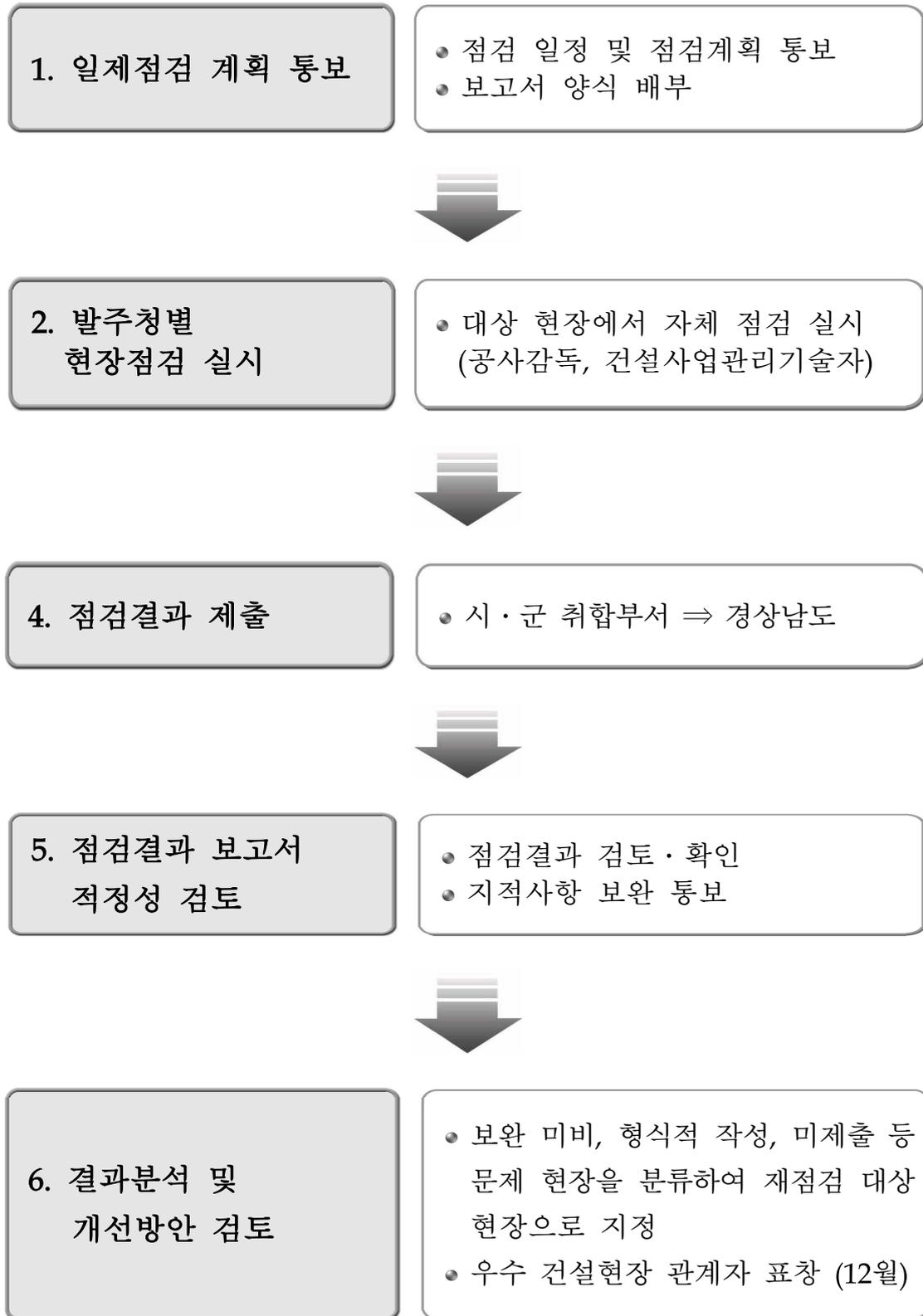
상반기	1월	3월 (1/4분기)	5월	6월 (2/4분기)
점검방법	계획수립	민간 전문가 합 동	발주청별 일제점검	민간 전문가 합 동
하반기	9월 (3/4분기)	10월	11월 (4/4분기)	12월
점검방법	민간 전문가 합 동	발주청별 일제점검	민간 전문가 합 동	건설공사 관계자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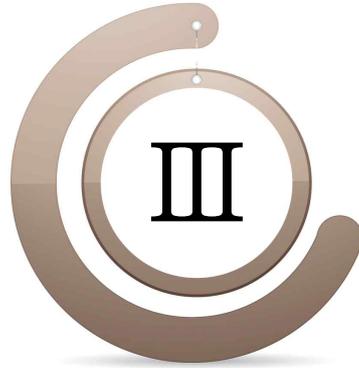
## 6. 점검업무 처리 절차

### ○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 발주청별 일제점검





## **점검자 업무 요령**



## 1. 공정한 업무 수행

- 점검자는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여 점검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
- 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점검자는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됨
-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업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 2.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점검자는 피점검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 3. 점검업무 수행 절차 및 결과 처리

- 점검자는 점검업무 수행시 방문기록부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 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함
- 점검자는 점검수행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음
- 점검자는 점검결과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할 경우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음

-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점검자는 시정지시 등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4. 건설현장점검 유의사항**

- 점검일정은 사전에 각 현장에 통지하고, 점검으로 인하여 현장 공사 업무에 불필요한 지장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 건설현장 점검 시 사전에 해당현장의 주요공법 및 제반 규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한다.
- 점검 시에는 알맞은 점검복장을 착용하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삼가하며 피점검자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한다.
- 지적사안에 대하여는 명백한 제반규정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서를 징구한다.
- 지적사안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부실벌점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며, 최종 완료 시까지 대외 보안에 유의한다.
- 점검 중 식사는 현장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점검자를 동반하지 않는다.
- 점검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한다.



## **수검자의 권리 및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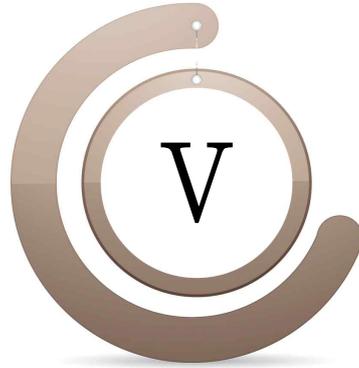
## 1. 수검자의 권리

- 수검자(업체)는 중복점검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점검시기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검자(업체)는 점검기관으로부터 점검기간, 점검자 등 내용을 사전에 통보 받게 됨.(세부 일정 조정은 유선 통보)
- 점검자에 대한 신분증을 제시 받을 수 있음.
- 점검자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개인 정보 등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단,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비공개대상(보호) 정보 외에 비공개를 원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음.
-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검자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전이라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 등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점검 및 처리, 이의 제기 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점검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2. 수검자의 의무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 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 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수검자(업체)는 점검요원에게 금품 제공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주요 점검 내용



## 1. 시 공 분 야

### 1.1 서류점검 사항

-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 토취장, 사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 실태
- 토공작업 시 표토제거, 별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 상태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 가도, 가교 시공의 적정성
-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성
- 구조물공사 완료 후 뒷채움 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성
-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 조적공사 쌓기모르터의 충전 등 시공 적정 여부
-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 2. 품질 분야

### 2.1 일반사항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 실태
-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 각종 관리도면(토공, 포장공, 콘크리트공 등) 작성비치 여부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 2.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2016. 7. 4.>
3. 철거공사

## 2.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의 제7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품질관리(적절성)확인 요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 2020.10.13.)」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별표 1】

항목	내용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li> <li>◦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li> <li>◦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li> <li>◦ KS Q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li> </ul>
3.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li> </ul>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li> </ul> <p>1.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관련주체, 공종 현</p>

항목	내용
	<p>황, 계약 특이사항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p>
<p>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 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li> <li>◦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li> <li>2.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li> <li>3.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검토 관리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란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li> </ul> </li> </ol> </li> </ul>
<p>4.3 프로세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예 : 프로세스 맵핑)</li> <li>◦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결정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li> <li>2.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li> <li>3.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li> <li>4.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li> <li>5.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li> <li>6. 프로세스의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을 위한 모든 변경사항의 실행</li> <li>7. 프로세스의 개선</li> <li>8.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p>5. 리더십 5.1 품질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li> <li>◦ 품질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li> </ol> </li> </ul>

항목	내용
	<p>족시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li> <li>3.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li> <li>4.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li> <li>5.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방침은 공사수행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li> </ul>
5.2 책임 및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li> <li>◦ 현장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li> <li>2.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도급자 등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사 관련자간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li> <li>3. 내·외부 점검 및 결과 조치(내부심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li> <li>4. 시정조치의 관리</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 책임과 권한은 단위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li> </ul>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여야 한다.</li> <li>◦ 리스크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스크와 기회 파악</li> <li>2.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조치하고 효과성 평가</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6.2 품질목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li> <li>◦ 품질목표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li> </ul>

항목	내용
	<p>된 정보를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목표 일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li> <li>나. 측정 가능해야 함.</li> <li>다.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li> <li>라.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되어야 함.</li> <li>마. 모니터링 되어야 함.</li> <li>바. 의사소통 되어야 함.</li> <li>사.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li> <li>아.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 함.</li> </ol> </li> <li>2.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품질목표 달성대상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li> <li>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li> <li>다. 달성도 확인 주기 및 결과 평가방법</li> <li>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6.3 품질관리 계획의 변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로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li> <li>◦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결과</li> <li>2.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li> <li>3. 자원의 사용 가능성</li> <li>4.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7. 지원 7.1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li> <li>◦ 자원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적자원의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품질관리계획서의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련 법령, 발주자 요구 등)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li> </ol> </li> </ul>

항목	내용
	<p>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2. 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의 관리</p> <p>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필요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항</p> <p>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p>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 자원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li> <li>◦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 및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 결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li> <li>2.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 검토와 사용 여부의 판단,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li> <li>3. 장비별 고유의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li> <li>4.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li> <li>5.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7.3 조직의 지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등의 필요한 지식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지식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요한 지식의 파악 및 결정</li> <li>2. 정해진 지식(내부 및 외부)의 유지관리 및 이용 가능한 방법.</li> <li>3. 신규 지식 및 요구 지식이 적용될 경우 입수 또는 이용방법</li> <li>4.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 지식이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예: 계약서, 시방서,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p> </li> </ul>

항목	내용
	<p>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p>
<p>7.4 역량/적격성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역량 /적격성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li> <li>◦ 역량/적격성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의 역량/적격성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결정된 역량/적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역량/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 교육훈련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li> <li>나.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li> <li>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li> <li>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li> <li>2.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li> <li>3. 교육훈련의 실시</li> <li>4. 교육훈련결과의 보고</li> <li>5.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p>7.5 의사소통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li> <li>2.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li> <li>3.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li> <li>4.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li> <li>5. 비상시 대비 및 대응</li> <li>6.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li> <li>7.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사소통 내용</li> <li>2. 의사소통 시기</li> <li>3. 의사소통 대상</li> <li>4. 의사소통 방법</li> <li>5. 의사소통 담당자</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 관리계획서를 충족시키고 적합성 증거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내부의 문서화된 정보</li> <li>2.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기술시방 등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li> <li>3. 적합하다는 증거로 작성되는 문서화된 정보</li> <li>4. 그 밖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li> </ol> </li> <li>◦ 문서화된 정보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성, 검토, 승인,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li> <li>2.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li> <li>3.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li> <li>4.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 문서화된 정보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에 관한 방법</li> <li>2.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방법</li> <li>3. 변경관리(예: 버전관리) 방법</li> <li>4.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유 및 폐기방법</li> <li>5.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식별 및 관리방법</li> <li>6.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방법</li> <li>7.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련된 법규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요구</li> </ul>

항목	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p>사항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수행을 준비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 요구사항의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검토시기, 방법 및 책임자 지정</li> <li>나.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li> <li>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2. 사전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계획 및 이행</li> <li>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계획 및 이행</li> <li>다. 측량기준점 보호 및 확인측량(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및 이행</li> <li>마. 현지여건 조사</li> <li>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ol> </li> </ul>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li> <li>◦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li> <li>2. 관련 문서화된 정보의 수정과 관련 인원의 변경 요구사항 인식 방법</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3 설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계를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설계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li> <li>2. 설계입력 요구사항의 결정</li> <li>3. 설계관리(검토, 검증, 실현성 확인)의 수행</li> <li>4. 설계출력의 입력 요구사항 충족</li> <li>5. 설계변경의 식별, 검토 및 관리</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4 기자재 구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기자재가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ul>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구매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li> <li>2.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li> <li>3. 발주 방법</li> <li>4.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li> <li>5.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li> <li>6. 제작품 구매의 경우, 검증방법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li> <li>7.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처리할 경우, 하도급 공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li> <li>◦ 하도급 공종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도급 계획 수립</li> <li>2.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 업체의 평가 및 선정(필요한 경우)</li> <li>3.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li>4.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필요한 경우)</li> <li>5.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li> <li>6.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li> <li>7.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li> <li>8.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6 공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li> <li>◦ 건설공사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공관리(시공계획을 포함한다)</li> <li>2. 필요한 경우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의 수립</li> <li>3. 공사진도관리(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li> </ol> </li> </ul>

항목	내용
	<p>계획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li> <li>5.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있는 인원 선정관리</li> <li>6.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8.7 중점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li> <li>◦ 중점 품질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li> <li>2.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li> <li>3.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li> <li>4. 작업방법 결정 및 모니터링 방법</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8 식별 및 추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li>◦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li> <li>2.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li> <li>3.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li> <li>4.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건설 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li>◦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파악 및 수급계획</li> <li>2. 재산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li> <li>3. 보관시 재산의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처리 방법</li> <li>4.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li> </ol> </li> </ul>

항목	내용
	5. 잉여 재산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은 고객 또는 조직의 일부가 아닌 공급자가 지급하는 재산(예: 자재, 부품, 공구 및 장비, 고객 부동산, 지적 소유권 및 개인정보 등)
8.10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li> <li>◦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li> <li>2. 기자재의 고유한 특성의 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반출방법</li> <li>3.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보호방안</li> <li>4. 화재 및 보안관리 사항</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li> <li>◦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ITP)의 수립</li> <li>2.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역할</li> <li>3.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li> <li>4.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5.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li> <li>6. 검사 또는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 검토 방법</li> <li>7.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후속공정의 진행 및 공사 목적물의 인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li> <li>◦ 부적합 공사의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li> </ul>

항목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적합 공사 특성에 따른 식별방법</li> <li>2.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li> <li>3.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li> <li>4.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li> <li>5.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li> <li>6. 부적합 공사의 처리방안 결정시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 방법</li> <li>7.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li> <li>8. 취해진 모든 조치의 효과성 검토</li> <li>9.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8.13 공사준공 및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 요구사항,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서 및 기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파악, 확보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완공된 시설물과 함께 인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li> <li>◦ 공사준공 및 인계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준공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필요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li> <li>나. 준공검사의 신청</li> <li>다.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라.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li> <li>마. 준공표지의 설치</li> <li>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li> <li>2. 시설물 및 공사관련 문서 및 기록의 인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li> <li>나.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li> <li>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li> <li>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li> </ol> </li> </ul>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li> <li>◦ 요구 및 기대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li> </ul>

항목	내용
	<p>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 수집 방법</li> <li>2. 모니터링(설문조사, 피드백, 미팅, 칭찬, 클레임 등) 및 검토 방법</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9.2 분석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li> <li>◦ 분석 및 평가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li> <li>2. 주요자재의 품질경향</li> <li>3.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li> <li>4. 내부심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의 결과</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9.3 내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이행성,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li> <li>◦ 내부심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주기, 심사범위, 심사기준,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심사자 선정을 포함한 심사 계획의 수립</li> <li>2. 심사 수행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li> <li>3.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li> <li>4.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li> <li>5.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9.4 경영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 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현장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li> <li>◦ 경영검토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li> </ol> </li> </ul>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li> <li>3. 자원의 충족성</li> <li>4.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li> <li>5.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li> <li>6.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불만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li> <li>다.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li> <li>라.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li> <li>마. 현장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결과</li> <li>바. 외부공급자의 성과</li> </ul> </li> </ul> </li> <li>7.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법</li> <li>8.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p>10. 개선</p> <p>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li>◦ 부적합 및 시정조치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적합 공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li> <li>2. 부적합 원인의 결정</li> <li>3.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li> <li>4. 필요한 모든 조치의 결정 및 실행</li> <li>5.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li> <li>6. 필요한 경우,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갱신</li> <li>7.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의 변경</li> <li>8.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ul> </li> </ul>
<p>10.2 지속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li> <li>◦ 지속적 개선관리 절차에는 요구 또는 기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li> </ul>

항목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 및 평가의 결과</li> <li>2. 건설공사 경영검토 결과</li> <li>3.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1항관련)【별표 3】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명시 및 검토·승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였는지 확인.</li> <li>◦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였는지 확인.</li> <li>◦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품질관리계획서 변경도 동일).</li> </ul>
2. 적용범위 및 인용 표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준수 및 적용 범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에 따라 모든 항목과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li> <li>◦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의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제외한 사유가 명시 되었는지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li> </ul>
3. 용어 정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용어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li> </ul>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ul>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관리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li>◦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파악 및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li> </ul>
4.3 프로세스 관리	건설공사의 프로세스 결정 및 운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상호관계를 명시하였는지 확인.</li> <li>◦ 프로세스별로 요구되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었</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p>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기준 및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자원의 결정,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지 확인.</li> </ul>
<p>5. 리더십 5.1 품질방침</p>	<p>품질방침의 수립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최고책임자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수립된 품질방침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li> </ul>
	<p>공사 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방침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계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품질방침이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p>5.2 책임과 권한</p>	<p>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확인.</li> <li>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li> </ul>
	<p>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각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li> <li>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사소통되었는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조직 구성원의 변경시 책임과 권한이 변경(개정)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li> </ul>
<p>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p>	<p>리스크 파악 및 관리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리		<p>고 있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리스크는 조치되고 결과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는지 확인.</li> </ul>
6.2 품질목표관리	품질목표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목표는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li> <li>◦ 품질목표는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li> <li>◦ 품질목표는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ul>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달성대상의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주기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li>◦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공사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목표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품질목표가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li> <li>◦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li> </ul>
7. 지원 7.1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li> <li>◦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기반구조 및 작업 환경의 확보 및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li> </ul> </li> </ul>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 확보, 교정검사 및 유지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시험, 측정에 필요한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을 결정하여 장비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li>◦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교정성적서의 결과값을 장비관리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장비가 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li> <li>◦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수를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7.3 조직의 지식관리	지식 결정 및 관련조직과 공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b>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b>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li> <li>◦ 파악된 지식은 유지·관리되고 관련 조직과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li> </ul>
7.4 역량/적격성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역량/적격성 기준</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역량/적격성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li>공사수행에 배치된 인원들에 대하여 역량/적격성 기준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법적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훈련결과(교육내용 포함)를 보고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효과성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7.5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방안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의사소통 방안에는 의사소통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li> <li>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이해관계자 불만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한 처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이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부적합 사항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 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품질문서(품질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효력이 상실된 구문서는 폐기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 관리하</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고 있는지를 확인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문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와 자료(법령, 건설기준 등)가 파악되고,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관리됨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화된 정보가 유형별로 식별되고 검색 및 사용이 용이한지를 확인</li> <li>◦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문서화된 정보를 폐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목록이 정해지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설계도서, 법규 및 지방서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법규·건설기준, 표준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3 설계관리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li> </ul>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입력 요구사항이 결정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관리 여부	보가 제시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검토된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설계검증, 설계실현성 확인이 실시되고,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4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기준)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제작품의 경우, 발주서에 검증계획 및 운반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li> </ul>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계획이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고 선정 또는 평가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필요한 경우)</li> <li>◦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6 공사관리	공종의 파악 및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확인
	작업방법 수립 및 적격 인원 투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파악된 자격 및 역량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작업자는 최신본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구도면은 회수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li> </ul>
8.7 중점품질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작업방법의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결과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8 식별 및 추적관리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식별이 실시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검사 및 시험 상태 (검사대기, 검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절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부적합) 식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li> </ul>
8.9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 관리	재산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 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재산이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 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잉여 재산의 처리 사항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10 보존 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 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장기 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장비, 기법,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장소·방법이 등이 건설공사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 하게 수립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ul>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적기에 누락 없이 실시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 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검사 또는 시험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게 의뢰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p>령에서 정한 품질검사의뢰서 및 품질검사성적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한 공사(자재·공정 등) 특성에 적합하게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li> <li>◦ 부적합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부적합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부적합 공사 발생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li> <li>◦ 유사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li> </ul>
8.13 공사 준공 및 인계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 본사에 인계할 문서화된 정보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li> <li>◦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9.2 분석 및 평가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내·외부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에 대한 이행 여부	
9.3 내부심사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내부심사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심사 계획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이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의 역량/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심사자의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자가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li> <li>◦ 내부심사는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심사체크리스트 및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li> <li>◦ 심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시정조치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9.4 경영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검토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경영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li>◦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 (해당되는 경우)</li> <li>·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li> <li>· 자원의 충족여부</li> <li>·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li> <li>·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li> <li>·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등</li> </ul> </li> <li>◦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에는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li> </ul>

항목	확인기준	확인요령
		<p>항, 검사·시험·모니터링·측정결과,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점검결과, 외부 공급자의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p>10.개선 10.1부적합 및 시정조치</p>	<p>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부적합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고려한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또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ul>
<p>10.2지속적 개선</p>	<p>지속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실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li> <li>◦ 지속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li> </ul>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 리기술자	소속:                    성명: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사 개 요			
첨 부 (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가. 건설공사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나.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1)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2)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3)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 여부		

다. 책임 및 권한	1)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2)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라. 문서관리	1)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2)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마. 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바. 자원관리	1)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 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사. 설계관리	1)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2)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3)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아. 건설공사 수행준비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 전 검토 여부		
자. 계약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차.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카. 의사소통	1)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2) 민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타. 기자재의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파.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하. 하도급 관리	1)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2)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거. 공사관리	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3)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너. 중점품질 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더. 식별 및 추적	1)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2)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러.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머.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 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버.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1)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 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2)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適期)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서. 부적합 공사의 관리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하자 발생에 대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절성		
어. 데이터의 분석	1)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2)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3)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처.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커.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검토의 실시 여부		
터. 공사 준공 및 인계	공사 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가.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1)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바.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 비 고

가.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적용한다(다만, 품질관리계획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이 점검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정성

-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5.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8.>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26.>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020. 5. 2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2.5 품질관리(시험)계획 이행 여부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42 품질검사 대장, 서식43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가. 공사명
  - 나. 시공자
  -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가. 공종
  - 나. 시험 종목
  - 다. 시험 계획물량
  - 라. 시험 빈도
  - 마. 시험 횟수
  -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가. 장비명
  - 나. 규격
  - 다. 단위
  - 라. 수량
  -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가. 성명
  - 나. 등급
  -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 마. 그 밖의 사항

## 2.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 2020. 10. 13.)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지 제8호 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공사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운반가능 시간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input type="checkbox"/> 인증 <input type="checkbox"/>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m <sup>3</sup> /일	전년도 생산량	m <sup>3</sup>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페레미콘 재생설비	<input type="checkbox"/> 구비 <input type="checkbox"/> 미구비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적 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시 험기술 인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골 재 저 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저장시설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6. 합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하절기)		
옥외시험 및 검사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sup>-</sup> )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에서 제거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시멘트 저 장 설 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혼 화 재 료 저 장 설 비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5.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사이로 내 시료채취구 설치 여부		
운반장치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잔골재·굵은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설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회수수 처리시설 및 페레미콘 처리시설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2.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3. 페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믹서 등 기계장치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mm 이하인가?(믹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내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상호 비교)		
	2.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 이상 또는 150m <sup>3</sup> 마다),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3. 원자재의 밀도변화, 골재의 조립을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생산개시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검사(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온도 등)		
	3. 공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레미콘 생산시 공장의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 $Cl^-$ )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필요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병행)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 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염분 함유량(NaCl), 마모감량은 월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마다, 안정성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은 년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실시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입고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삭 제>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폼 등)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기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9.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폼 등) 사용시 공급원 승인권자와 혼화재 품질 등에 관하여 협의후 사용하는가?(계약서, 납품서 등의 비치 및 기록 확인, 혼화재 품질시험 기록 확인)		
	10.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11.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2.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13.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이 준수·관리되고 있으며, 생산기록지에 표기되고 있는가?		
	14.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일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단, 회수수는 고형분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15. 회수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품질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8.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9.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원시데이터(Raw data : 최종시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기록한 기록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 점검표 작성요령

- 1)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점검자 책임하에 실제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장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것.
- 2)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지 제9호 서식】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공사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 검 자 (공장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운반가능 시간	포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input type="checkbox"/> 인증 <input type="checkbox"/>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톤/일	전년도 생산량	톤/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아미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처리계획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구비 또는 적정 <input type="checkbox"/> 미구비 또는 부적정 - 부적정 사유 기재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적 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시 험기술 인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골재저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는 적정한가?		
	5.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며 식별표시하고 있는가?		
채 음 재 저장설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콜드빈 (Cold bin)	1. 골재공급시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2.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드라이어 및 스크린	1. 드라이어 출구에 부착된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 예비 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하트빈 (Hot bin)	1.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2. Overflow pipe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믹서	1.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우는 없는가?		
	2. 믹서 내부로 구리스 등 이물질의 혼입 요인은 없는가?(믹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		
계량장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장치에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2. 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 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3. 골재를 하트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일 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가?		
	4. 하트빈, 드라이어 출구, 아스팔트 저장소에 부착된 자기온도계는 정상적이며 교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5. 골재 공급상태는 모니터로 확인이 되는가?		
	6. 계량기별로 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7.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하고 있는가?		
	8. 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9.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다짐시험기 받침, 항온수조 온도 등)		
	3. 공장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아스콘 생산시 공장에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품질시험 병행)		
	4. 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가?(보정 포함)		
	5.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6. 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7. 아스팔트의 시험항목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 제품의 경우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침입도 등)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8. 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시 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9. 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 온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9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혼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11. 채움재의 반입량, 반입일 등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2. 폐아스콘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와 협의한 후 배합설계 등 품질에 대한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폐아스콘 재생설비를 갖춘 공장만 해당)		
	13. 회수 더스트를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와 협의한 후 회수 더스트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결 과
종합의견			

※ 점검표 작성요령

- 1)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점검자 책임하에 실제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장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것
- 2)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등)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지 제14호 서식】

## 불량자재폐기 협약서

□ 불량자재 내역

운반차 번호	
자재명 및 규격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품 지시자	공사감독자 ○ ○ ○ 또는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 ○ ○ ○ 서명
반 품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반품 지시된 불량자재는 폐기처리 할  
것을 협약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구분(직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 명
운전기사				
공장 품질관리책임자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

### 3. 안전 분야

#### 3.1 일반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
-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3.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향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1.>

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 3.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시행규칙 제5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현장 특성 분석

####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예측계획을 포함한다)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 표준 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종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3.4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 3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 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4호·제26호·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p>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46. 건설업	<p>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p>	1명 이상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p>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p>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건 설업종란 제1 호에 따른 토 목공사업의 경 우에는 150억 원 이상) 800 억원 미만</p>		
	<p>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억원 미 만</p>	<p>2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 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 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 당하는 기간 (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 당하는 기간" 이라 한다) 동 안은 1명 이상 으로 한다.</p>	<p>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 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3,900억원 이 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 상으로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1 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 상 6천억원 미 만	7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 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 2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공사금액 6천 억원 이상 7,200억원 미 만	8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 상으로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2 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 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 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 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 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 상으로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 는 기간에는 산업 안전지도사등이 3 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 의 2분의 1(소 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 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3.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자체)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2020. 1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

## 진단전문기관

###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③ 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9, 2020.1.23.)

### ○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별표 2】

####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비고

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분야를 말함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9, 2020.1.23.)

###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별표 1】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향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 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사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7】

항 목	내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p>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li> <li>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li> <li>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li> <li>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li> </ol> <p>(거푸집 및 동바리 등)</p> <p>※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p> <p>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li> <li>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li> <li>-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li> </ul> </li> </ol> <p>※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p>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p>가. 정기안전점검 비용</p> <p>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p> <p>나. 초기점검 비용</p> <p>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p> <p>※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p>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p>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매달기 공사 비용</li> <li>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li> <li>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li> <li>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li> </ol>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li> <li>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li> </ol>

	<p>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p> <p>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p> <p>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p>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p> <p>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p> <p>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p> <p>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p> <p>※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p> <p>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p>
<p>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p>	<p>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p> <p>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p> <p>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p> <p>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p> <p>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p> <p>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p> <p>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p> <p>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p> <p>※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p> <p>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p>
<p>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p>	<p>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p> <p>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p> <p>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p>

### 3.6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 월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 3.7 안전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과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6. 7. 4., 2020. 3. 18.>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4.>

## 4. 기 타 분 야

###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독) 현장관리

- 시공단계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의 검토·확인 여부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여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적정 여부
- 발주기관 및 점검기관 지시사항 이행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등 검토·확인 적정 여부
-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여부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적정 여부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발생 여부 등

### 4.2 환경관리

- 건설공사 후 발생한 폐자재의 처리상태 적정 여부
- 인접마을 등에 대한 가설방음벽, 비산방지망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 대책 수립 여부
- 과적차량 검문소 및 세륜시설 등 설치·관리 여부
- 건설자재 등의 하천유입에 대한 방지 대책 등

### 4.3 시공상세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여부

#### □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 4.4 건설사업관리 업무 이행 여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삭제 <2017.12.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 7., 2020. 5. 26.>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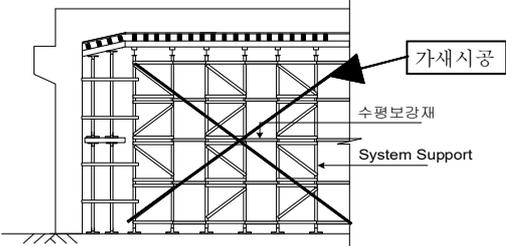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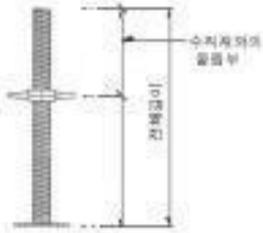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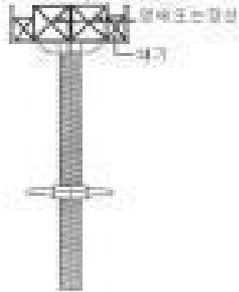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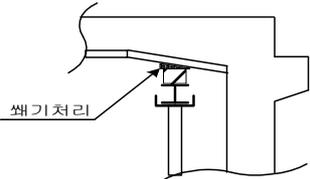
## 4.5 주요 구조물의 가시설물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은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확인)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강제 파이프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2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에 필요한 가새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동바리 상부는 명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가새재를 동바리 밑등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 ※ 시스템동바리 점검 체크리스트

### 1. 사용자재 및 설치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시스템동바리는 KS F 8021에 적합하거나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였는가		
2.시스템동바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였는가		
3.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고, 체결후 흔들림이 있지는 않는가		
4.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립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5.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 3배 미만으로 하고, 초과시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 방지조치를 취하였는가		
6.초기 설치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의 편심에 의한 구조적 손실을 방지 하였는가		
7.U헤드 잭에 얹히는 장선, 멩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편심에 의한 응력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8.재사용 강재의 사용으로 연결부의 유격 또는 움직임이 있는가?		
9.잭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mm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mm이상 인가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0.수직재 설치시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11.시스템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 하였는가		
12.시스템동바리 상부의 U헤드의 폭은 멩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썰기 등을 사용하여 멩에재와 U헤드를 밀착시켜 멩에재와 U헤드와의 유격을 없이 하였는가		
13.연결편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연결 부위에 꺾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14.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해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였는가		
15.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였는가		
16.U헤드와 강관연결부의 흔들림방지를 위해 추가 브레이싱을 설치하였는가		
17.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썰기 등을 이용 또는 바닥틀을 계단식으로 정지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였는가		
18.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편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19.상부슬래브 현치부 및 중.횡방향 경사부는 썰기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밀착되도록 하고 썰기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2. 구조해석 및 지반지지력 확인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확대기초에서의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F2444,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지반 지지력 확인하고 항복 강도의 1/2 및 극한강도의 1/3 중 작은값을 적용 하였는가		
2.평판재하시험의 경우 재하판 지름의 2배까지만 영향이 미치므로 지하수 등에 유의하고 특히 지반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 강성 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 하였는가		
3.허용침하량에 의한 1/3지지력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 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값을 허용지지력으로 산정 하였는가		
4.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때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10cm 이상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이상의 받침목, 전용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 하였는가		
5.기초지반에 직접 받침목을 설치할 경우 부등침하에 의한 영향을 필히 검토하였는가		
6.하천에 판매설후 성토하여 기초지반 조성시 쌓기하여 결함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7.비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 및 동바리 설치 상태를 철저히 재점검후 시행하였는가		
8.구조계산시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체가 기하학적으로 수평 구조체인가에 대해 반영되었는지?		
9.콘크리트 아치구조는 콘크리트 타설순서에 따른 구조해석시 하중경우가 반영되었는지?		
10.구조검토시 반드시 수평력(고정하중의 2% 또는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중에서 큰 값 적용) 및 수직력(고정하중, 충격하중 : 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 : 150kgf/m <sup>2</sup> 적용)에 대한 검토와 가새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11.단판이 좌굴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는지?		
12.풍하중의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하였는가?		
13.동바리기초 쌓기 외측부에 경사면이 형성되는 경우 최대한의 경사완화와 여유폭이 확보되었는가		
14.본 구조물의 기초형식이 말뚝기초인 경우 동바리 기초틀도 말뚝기초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3. 콘크리트 타설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가 신속 대피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수립 되어 있는가		
2.콘크리트 타설시 편측재하가 되지않도록 타설 순서도에 따라 하중재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콘크리트 타설을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4.라멘교 슬래브 등 부재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 2단타설을 검토하고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여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타설하고 있는가		
5.슬래브 콘크리트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6.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설계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7.콘크리트 타설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을 철저히 한 다음 서서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가		

## □ 동바리붕괴 재해 예방대책

### 1. 일반 안전 준수사항

- 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시스템서포트의 경우에는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검토 철저 - 교차가새
- 조립도를 준수하여 동바리 설치
- 동바리 불량자재 및 미검정품 사용금지
- PIPE SUPPORT 2단 구조(중간에 각재 설치) 금지
- 동바리의 상·하부 고정 철저
- 수평연결재 설치 철저
- 동바리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 설치
- 수평연결재는 비계용 단관파이프를 전용 클립으로 체결하여 설치
- 동바리 받침부분 침하방지 조치 철저
- 지반은 충분한 다짐 및 빗물 배제 등 침하방지용 천막설치, 바닥은 임시콘크리트 타설
- 바닥의 깔목은 충분한 두께의 대각재(토류판 등)를 정자형으로 교차 설치
- 흐르는 강물은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세굴 등 예방
- 경사슬래브(Ramp way) 상·하부면 미끄럼방지 (쌓기)조치 및 수평연결재 설치 철저
- 높이 6m 이상 시스템서포트 설치시 좌굴에 대한 검토 확인
- 바닥의 잭베이스와 상부의 유-헤드잭을 중심부에 고정 설치
- 경사슬래브(Ramp way) 미끄럼방지 조치
- 수평연결재, 수평재, 가새를 누락없이 설치

### 2.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수칙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 수립
-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 분산 타설





# 건설공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 공통사항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력배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적정성		
품질관리	<p>-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수립대상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li> <li>·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li> <li>· 당해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공사</li> </ul> <p>-품질시험계획의 수립대상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li> <li>·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li> <li>·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li> </ul>		
안전관리	<p>-안전관리계획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별로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의 안정성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li> <li>·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li> <li>·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li> </ul> <p>-정기안전점검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li> </ul>		
	<p>-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작성대상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li> <li>· 지하10m이상 굴착공사</li> <li>· 폭발물 사용공사로 20m 이내 시설물 존치 및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li> <li>·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li> <li>·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li> <li>·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향타 및 향받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li> <li>·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li> </ul> </li> </ul>		

<b>안전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li> <li>-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li> <li>-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li> <li>· 발주자,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li> </ul>		
	<p><b>-안전교육내용의 적정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안전교육 : 1회/월이상 : 안전관리총괄책임자</li> <li>· 일상 안전교육 : 매일 : 분야별 책임자</li> <li>·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1회/2주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li> </ul>		

# □ 도 로

## 1. 토 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흙쌓기	- <b>흙쌓기 재료의 적정여부</b> · 유해물 초목, 그루터기, 덩불 등 유해물질 포함여부 · 동결된 재료 포함 여부		
	- <b>흙쌓기 시공의 적정여부</b> ·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등 제거여부 · 흙쌓기부 동결토 제거 여부 · 비탈면 부위 흙쌓기 시 층따기 실시여부 · 용수발생구간 배수구 설치여부 · 1층다짐 두께 적정여부(노체 30cm, 노상 20cm)		
	- <b>암쌓기의 적정여부</b> · 암버럭 쌓기는 노체완성면 60cm 이하에서만 사용 · 암덩어리는 60cm이상 초과 금지 준수여부 및 수침작용으로 연약해지는 암버럭은 30cm 이하 준수여부 · 1층다짐 두께 60cm 준수여부 · 다짐효과에 유리한 대형 진동다짐 장비(탐핑로울러) 사용여부		
	- <b>횡방향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편질, 편성)또는 종방향 흙쌓기, 흙깎기(절·성 경계부)적정여부</b> · 경계구간의 접속부에 암버럭 쌓기 여부 · 편질, 편성구간 층따기 실시 여부		
	- <b>가 배수의 적정여부</b> · 흙쌓기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여부 · 일 작업 종료 시 횡단기울기가 4%유지 관리여부 · 흙쌓기 가장자리 및 도수로 설치자리에 가배수로 설치여부		
	- <b>다짐관리의 적정여부</b> · 노체 : 1층 다짐두께 30cm,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 · 노상 : 1층 다짐두께 20cm,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 <b>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료 포함)의 적정여부</b> · 되메우기용 재료의 적정여부(표준시방서25 3.1, 3.2) · 뒷채움 재료의 적정여부(표준시방서 8.2):보조기층재 사용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흙깎기	<b>-토공마무리면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면은 노상 계획고 보다 3cm미만 준수여부</li> <li>· 3m 직선자로 검사 시 1cm 이상의 요철 금지</li> <li>· 프루프 롤링 검사 시 변형량 5mm미만 준수여부</li> <li>· 보조기층 포설전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 등을 경과한 경우 및 3개월 이상 방치한 노상면은 재다짐</li> </ul>		
	<b>-별개제근 작업으로 발생된 제거물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 등은 지표면에서 20cm까지 제거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탈면 경사 적정여부(당해 설계도서 참조)</li> </ul>		
	<b>-흙깎기 구간의 요철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깎기 구간의 요철정도 적정여부(15cm)</li> <li>· 발파로 인하여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돌 제거 여부</li> </ul>		
	<b>-흙깎기 부의 마무리 면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 마무리의 적정여부</li> </ul>		
	<b>-흙깎기 허용오차 범위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상 : 토사 ±3cm, 암반 +3cm, -15cm</li> <li>· 토사비탈면 : ±10cm</li> <li>· 풍화암 비탈면 : ±20cm</li> <li>· 발파암 비탈면 : ±30c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깎기 면의 상부 균열발생 징후 여부</li> </ul>		
	<b>-흙깎기 면의 용수발생 및 대책 수립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 가배수로 설치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발파 시공 검측 확인 여부</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b>비탈면 안정공사</b>	<b>-잔디 규격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떼 가로30cm, 세로30cm, 두께3cm</li> <li>· 줄떼 가로10cm, 세로15cm, 두께20cm</li> <li>·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 잔디1매당 2개의 때꽂이로 고정여부 및 사양토로 잔디사이를 채움여부</li> </ul>		
	<b>-종자 뽑어 붙이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종후 1개월 이내에 전면 골고루 발아여부</li> </ul>		
	<b>-식생 및 그물망·카페트(벚짚 포함)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폭0.5m 길이10m의 적정여부</li> <li>· 동일 재료로 고정끈 사용 여부</li> <li>· 앵커핀 1㎡당 1개소, 길이 25cm 고정핀 사용 여부(나무못, 부식성 플라스틱, 강철핀)</li> </ul>		
	<b>-암절개면 보호식재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망은 KS D3552에 적합한 소선에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사용여부</li> <li>· 오목한 곳에 앵커핀 사용여부</li> <li>· 시공두께 적정여부(설계도서 참조)  경사 1:1이하 완만한 경질토, 또는 자갈섞인 토사 : 두께5cm(철망 생략)  경사 1:1내외 사질토, 화강풍화토 또는 호박돌 및 자갈섞인 토사 : 7cm  경사 1:0.7내외의 완만한 풍화암, 연암, 또는 보통암이 혼재된 지역 : 10cm  경사 1:0.5 내외의 보통암 및 경암 : 15cm</li> </ul> <b>-암절취 뽑어 붙이기 공법의 배양토 성분 적정성 파악</b>		
	<b>-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럭 설치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순서의 적정여부 : 아래쪽에서 위쪽으로</li> <li>· 시공면에 물의 침투여부</li> </ul>		
	<b>-숏크리트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숏크리트 공사전 비탈면에 이토, 부석 등 제거여부</li> <li>· 비탈면의 배수공은 내경 4cm(침출수 확인 시 내경 8cm) 정의의 배수파이프 2㎡당 1개소 설치여부 및 암반의 균열부나 토사 구간에서는 깊이 25cm 이상 천공여부</li> <li>· 철망설치 시 앵커는 1㎡당 1개소 설치여부(비탈면이 비교적 넓은 경우 수축줄눈 설치여부)</li> <li>· 숏크리트 최소 두께의 적정여부(설계 두께의 75%)</li> </ul>		
	<b>-비탈면 돌망태 옹벽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선의 굵기 : 2.2mm(가장자리 3.4) 아연도금 또는 pvc코팅망 이용</li> <li>· 채움돌 규격의 적정여부(D=10-30cm)</li> <li>· 경사도 6%의 적정여부</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배수 시설	철근 콘크리트 암거	-암거용 지수판의 적정여부 · A형 : 두께 5mm, 폭 200mm 이상 · B형 : 두께 7mm, 폭 300mm 이상		
		-암거날개벽에 배수공 설치의 적정여부		
		-시공이음의 적정여부 ·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여부 ·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채움을 통로암거의 경우는 내부 수로암거는 내·외부 실시여부		
		-방수처리의 적정여부 ·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에 노출 되었을 경우 재시공 여부		
	파형 강판	-기초(모래 또는 사질토) 최소두께의 적정여부(900m/m기준) · 보통지반 : 20cm · 암지반 : 20cm · 연약지반 : 50cm -커프링 밴드 설치의 적정여부		
	공통 사항	-소켓의 상류(높은 곳)측으로 설치 여부 -관점합부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여부(용적비 1:2)		
	콘크리트 소구조물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경우 다우웰(dowel) 역할을 할수 있는 철근 설치여부 -L형 측구 시공의 적정부(인력) · 분리막 시공의 적정여부 · 팽창줄눈(20m) 설치 및 밀폐재(sealant) 시공여부 ·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일치여부 -L형 측구 시공의 적정부(기계) · 기계시공시 적기에 피막양생재 살포여부 · 수축줄눈 간격(6m), 폭(6mm) 및 깊이(40mm)의 적정여부 · 줄눈부에 주입재 주입여부		
		-V형, U형 측구 시공의 적정여부 ·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시공여부 ·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여부		
		-산마루 측구 시공의 적정여부 ·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설치 결정		
	지하 배수	-맹암거 설치의 적정여부 ·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뚜껑 설치여부 · 기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적정여부		

## 2. 철근콘크리트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철근	-철근의 보관상태의 적정성 ·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습기,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철근의 조립, 이음 및 결속상태의 적정여부 · 철근의 모든 교차점 등 겹치는 점에서의 결속여부 · 결속선의 끝이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조치여부 · 인장철근부에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조치여부 ·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의 보호여부		
	-부속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 철선의 사용여부 ·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 감독의 승인 · 애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결속선 등은 나일론, 애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제품사용 여부 -철근을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유무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의 적정여부 · 설계도서에 의한 피복두께 확보 여부 ·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5.4의 규정을 적용여부		
	-콘크리트 운반 관리의 적정여부 ·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 시간을 기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치기의 적정여부 · 콘크리트의 1층 다짐 높이는 0.5m이하로 하며,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5m이하 준수 여부 · 콘크리트를 1.5m이상 높은 곳에서 타설금지 준수여부 · 콘크리트 타설 시 표면의 블리딩수 제거 여부 ·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과 연속해 있을 경우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 콘크리트 타설후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 타설여부 · 콘크리트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금지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장비 사용의 적정여부		
	-시공이음 위치의 적정여부 ·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음의 적정여부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음시 시공상세도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 유무 ·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도록 시공이음 위치 적정여부 · 시공이음부에 콘크리트 타설 시 레이턴스 제거 유무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콘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축이음 설치구조 및 간격의 적정여부</li> <li>-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의 적정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콘크리트 양생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타설후 습윤상태로 양생의 적정여부</li> <li>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기온 15℃ 이상 5일</li> <li>  10℃ 이상 7일</li> <li>  5℃ 이상 9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경화된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금속장치의 방치상태 유무</li> <li>· 거푸집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에 대하여 면갈기 시행여부</li> <li>· 골재분리 방치 여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콘크리트 균열 허용오차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근 : 일반환경 0.005C</li> <li>· PS강재 : 0.004C</li> <li>·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의 허용 균열폭은 0.1mm</li> <li>※ C 피복두께(보통콘크리트 : 균열폭 0.3mm부터 보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균열발생부의 정기적인 관리 및 보수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평균기온이 4℃이하 한중콘크리트 사용여부</li> <li>-기온이 30℃를 초과하거나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될 때 서중콘크리트사용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메스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작성 이행여부</li> <li>· 메스콘크리트 : 넓이가 넓은 슬래브 두께 0.8m</li> <li>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0.5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수중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콘크리트 슬럼프값의 적정여부</li> <li>  트래미 : 130-180mm</li> <li>  콘크리트 펌프 : 130-180mm</li> <li>  밀열림상자, 포대 : 100-150mm</li> <li>·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가 표준</li> <li>· 단위시멘트량은 370kgf/cm<sup>3</sup> 이상 표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성의 적정여부</li> </ul> </li> <li>-<b>현장치기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순간격의 1/2이하 또는 25mm를 표준으로한다</li> <li>· 슬럼프 값은 180-320mm를 표준으로한다</li> <li>· 단위시멘트량은 350kgf/m<sup>3</sup> 이상으로 한다</li> </ul> </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거푸집	<b>-거푸집 설치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푸집 형상 및 위치의 정확성 여부</li> <li>· 거푸집 이음부에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여부</li> <li>·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 여부</li> <li>·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여부</li> <li>· 강제 거푸집일 경우 최소 두께 5mm이상 여부</li> </ul>		
	<b>-거푸집 박리제의 도포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근 설치전 박리제 도포여부</li> <li>· 강제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박리제 도포</li> <li>·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rod)에 박리제 도포 여부</li> </ul>		
동바리	<b>-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적정여부 : 일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하중 적정여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5(1.7.3)</li> <li>·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여부</li> <li>· 강제와 강제와의 접속부는 볼트, 클램프 등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li> <li>· 철선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li> </ul> <b>-목재동바리 사용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 설치여부</li> <li>·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2분 이상 덧댄목을 사용</li> <li>· 철선의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li> </ul> <b>-강관동바리 사용의 적정여부(파이프 서포트 제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관지주는 3분 이상 이어서 사용을 금지하며, 높이 2m마다 수평이음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여부</li> <li>· 지주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이상 사용 금지</li> </ul> <b>-강관틀 동바리 사용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경사재 설치 여부</li> <li>·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방향으로 설치 여부</li> <li>· 최상층 5개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경사재의 방향으로 띠장틀 설치 여부</li> </ul>		
비계	<b>-비계 조립 후 점검 항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재의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li> <li>·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li> <li>·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상태</li> <li>·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li> <li>·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럼짐 상태</li> <li>· 경사재,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li> <li>·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li> </ul>		

### 3. 교량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상부구조 (콘크리트)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의 적정여부 · 설계도서에 의한 동바리 설치여부 · 슬래브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침하관리 적정여부 · 폼 타이 혹은 타이볼트의 간격 및 중·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지 여부 ·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 적정여부		
	-거푸집 조립후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틈 발생 여부		
	-콘크리트 타설중 위험성 제거 여부 · 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에 대하여 해당시방서에 의한 관리여부		
	-데크피니셔 시공순서의 적정여부 · 종단경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 드럼가동은 편경사가 낮은곳에서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시공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 -슬래브가 곡선일 경우 횡방향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횡버팀목 설치여부		
	-슬래브 양생관리의 적정여부		
	-프리스트레스트(PSC빔)구조물 제작의 적정여부 · 시공상세도의 적정여부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계산서와 상세도 · 솟음 계산서		
상부구조 (강재)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 부재는 직접 땅에 접하지 않도록 조치여부 · 별도로 방식 처리가 안된 고장력 볼트 또는 너트는 방청유 도포 여부		
	-손상된 도막의 보수 여부		
	-용접상태의 적정여부		
	-볼트체결의 적정 여부		
	-강재의 국부 변형 여부		
신축이음부	-신축이음 장치의 관리 및 유간거리 적정여부		
	-후타재 균열 및 파손여부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교좌장치	<p>-교량받침의 고정단 가동단 구분을 색상별로 도색 반입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단 : 청색</li> <li>· 일방향 : 홍색</li> <li>· 양방향 : 황색</li> </ul>		
	<p>-강재받침부재의 아연도금 실시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텐레스가 아닌 강재부재(앵커볼트 포함)의 아연도금 실시여부</li> <li>· 받침 모르타르의 균열 및 파손 여부</li> </ul> <p>-앵커볼트 시공의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앵커볼트를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속에 미리 구멍을 만들 때 교대 및 교각의 주철근을 절단하여서는 안되나 부득이 절단한 경우 반드시 보강 여부</li> <li>· 부반력 받침의 경우 교대 및 교각에 미리 앵커볼트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li> </ul> <p>-탄성받침판(고무받침)설치의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온도가 15℃가 되었을 때 정상가동여부</li> <li>· 상부받침과 거더하부의 편평도는 0.01rad 이내로 수평이고 높이차는 1.6mm 이내 여부</li> </ul> <p>-기타 점검시 착안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동단 받침에서 온도 변화를 감안한 충분한 이동량</li> <li>· 균열, 잘못된 위치,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변형</li> <li>· 부식상태 및 불순물 침투상태</li> </ul>		
	<p>-교좌장치 연단거리 적정여부</p>		
하부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세굴 확인 및 대책 수립여부</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상의 터파기 잔토, 공사용 자재적치 등에 의한 유수 소통의 지장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탉방지망 설치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도 및 가교 설치의 적정 여부</li> </ul>		

#### 4. 터널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공통사항	<b>-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지보재 : 제품사항 및 시험성과</li> <li>· 록 볼트 : 설치기록 및 인발시험결과</li> <li>· 숏크리트 : 품질관리 시험결과</li> </ul>		
	<b>-강 지보재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지보재 설치 위치(설계도서)의 적정성(검측대상)</li> <li>· 강지보재와 원지반사이에 췌기 등으로 고정여부</li> <li>· 강지보재의 연결볼트 체결 적정여부</li> <li>· 강지보재에 녹이나 이물질의 부착여부</li> </ul>		
	<b>-숏크리트 두께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측된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75%이상</li> <li>· 두께관리의 적정여부(터널연장 20m마다 아치부 5개소, 측벽 좌우 1개소)</li> <li>· 건식 숏크리트일 경우 분진처리 계획의 적정여부</li> <li>· 숏크리트 타설전 뜯돌 등의 제거여부</li> <li>· 숏크리트 타설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 배수처리 계획의 적정여부</li> <li>· 1차 숏크리트 타설두께(10cm)의 적정여부</li> <li>· 압축강도의 적정여부(코아3개 압축강도 평균은 설계 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1개이상의 시험값이 기준 강도의 72%보다 작아서는 안됨) : 강섬유 제외</li> <li>· 터널벽면에서 지보재의 사이와 불규칙한 면은 길이대 깊이의 비율이 최소 7 : 1 이상의 적정여부</li> </ul>		
	<b>-Rock Bolt 인발시험 합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분당 1회(설정된 인발내력의 80% 이상)</li> <li>· 천공구멍은 록볼트 설치의 굴착면에 직각 여부</li> <li>· 록볼트의 부식여부</li> <li>· 용수가 많은 곳은 용수를 한곳으로 유도후 시공여부</li> <li>· 인발시험, 축력시험 등이 계측결과로부터 록볼트 추가 시공 여부</li> <li>· 록볼트 두부는 너트(Nut)면에서 5mm여유를 두고 절단후 숏크리트(4cm)마감의 적정여부</li> </ul>		
	<b>-지하수 및 침투수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중 용수는 즉시처리(당해시방서 참조)</li> </ul>		
	<b>-방수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직포 및 방수막 시험성과 확인</li> <li>· 방수막의 연결부는 봉합시험 1.5-2.0bar(1bar=1.02kg/cm<sup>2</sup>)에서 5-10분 보수부 : 진공검사(검사액 이용 2,000mmHg에서 거품발생이 없어야함(1mmHg=0.0013592kgf/cm<sup>2</sup>))</li> <li>· 천단부 란델의 설치개소를 측벽부에 비해 30%이상 추가시공 여부</li> </ul>		



## 5. 포장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보조기층	· 재료의 입도 분포 및 유해물 포함여부		
	-다짐층의 두께 및 전압밀도 적정여부 · 1층 다짐 두께 20cm, · 다짐밀도 : 최대건조밀도의 95% 아스콘 침하량 0.25cm에서 30kgf/cm <sup>2</sup> 콘크리트 침하량 0.125cm에서 20kgf/cm <sup>2</sup>		
	-포설 시 최적함수비 유지 · 최적함수비의 ±2%이내 유지		
	· 보조기층 시공전 노상면의 불순물 정리여부		
	-마감표면의 평탄성 적정여부 ·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됨 · 3m 직선자 이용 아스콘 2cm, 콘크리트 포장1cm 미만 ·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내 여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기층	-혼합물 품질의 적정여부(KS F 2337, KS F 2377)	
		-보조기층면에 유해물 포함여부	
		-포설시 기온이 5℃이하일 경우 포설금지 여부 및 1층 포설두께가 10cm 이하	
		-적정 다짐장비의 투입여부 · 8톤이상 머캐덤, 6톤이상 탄뎀, 10톤이상 타이어롤러	
		-완성두께(표층참조) 및 밀도의 적정여부 · 기준밀도의 96%이상여부 · 마무리면은 3m직선자 측정시 오목한곳이 3mm이상 금지	
콘크리트 포장	빈배합 기층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 최대건조밀도는 KS F2312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 단위시멘트량(별도규정없을 경우 150kgf/m <sup>3</sup> )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 최대건조밀도는 KS F2331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 1층 마무리두께 20cm의 적정여부	
	공통	·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하여부 · 설계두께의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재시공 · 시공이음의 적정여부 · 습윤양생의 적정여부(도로중 심전에 직각방향) · 포설 시 기온이 4℃이하일 경우 포설금지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표층)	-아스콘 포설전 기층면의 불순물 정리여부		
	-프라임 텍코트용 역청재료의 적정여부 · 재료의 품질기준 KSM 2203 · 역청재료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양생 : 프라임코트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적정여부KS F2337 KS F 2377 · 기준밀도의 적정여부(표건/표건-수중)*상온물의 밀도 · 현장배합 실시여부 · 운반 중 온도관리(덮개설치 여부) · 텍코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포설 여부 ·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 · 세로이음(0.15m), 가로이음(1.0m) 및 구조물과의 접속부의 청소 여부 및 역청재 도장 여부 · 지정온도(감독자지정) 보다 20℃보다 낮을경우(폐기)		
	-마감표면의 평탄성 적정여부 · 종방향 : 10cm/km 이하, 교량접속부 : 20cm/km 이하, · 횡방향 : 3mm 이하(기층, 표층) -확장부 또는 시가지 · 종방향 : 16cm/km 이하, 교량접속부 : 24cm/km 이하		
	-포설두께의 적정여부 · 완성두께는 설계보다 10%이상 초과, 5%이하여부		
	콘크리트 포장	· 시공순서 및 사용 장비 등의 투입계획 수립여부	
· 완성된 기층면에 뜯돌 등 유해물 제거 여부			
-보조기층면에 분리막설치 여부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은 분리막 설치하지 않음) · 분리막을 이음 할 경우 세로방향 10cm, 가로방향 30cm 이상 겹치는지 여부			
-거푸집 설치의 적정 여부 · 거푸집 측면에 브래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었는지 여부 (측면 높이의 2/3지점) · 거푸집 청결 여부 및 유지류 도포 여부 · 거푸집 변형여부(길이3m에 윗면3mm, 측면변형 6mm미만)			
-콘크리트 운반의 적정 여부 · 콘크리트를 비빈후 치기까지 1시간 이내 완료여부 · 애지테이트력으로 운반할 경우 90분 이내			
-슬립폼 페이브 깔기시 슬립프값 : 5cm이하			



## 6. 부대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부대공사	<b>-블럭공사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탄성의 적정여부(10mm)</li> <li>· 모래깔기의 적정여부(다짐후 3cm)</li> <li>· 블럭간격(2-3mm) 및 모래충진 후 다짐의 적정여부</li> </ul>		
	<b>-방음벽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사이에 틈의 발생유무</li> <li>· 방음벽 설치 250m마다 출입문 설치여부</li> <li>·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의 일치여부</li> <li>· 앵커볼트의 녹발생 방지를 위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발생 제품 사용여부</li> <li>· 방음벽 높이가 8m(판높이 7m)이상인 경우 보강철근 삽입여부</li> <li>· 방음벽 높이가 5.5m(판높이 4.5m)이상인 경우 지주 좌굴방지를 위해 2-3m간격으로 보강판(6mm)부착 여부</li> </ul>		
	<b>-도로표지판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표지규칙 : 건교부령 제357호(2003.5.24)참조</li> <li>· 도로표지 전방 가로수 식재 금지구간 준수 지방지역 : 150m, 도시지역 : 40m</li> <li>· 표지판 설치높이는 건축한계와 오차고려 500cm</li> </ul>		
	<b>-표지판 재질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판 두께3mm 이상(현수식 : 2mm 이상)</li> <li>· 알루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 사용하고 찬넬과 지주의 결합용 클립은 용융도금한 규격품 사용</li> </ul>		
	<b>-지주 재질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는 KDS355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DS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 이용</li> <li>· 지주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원형강 이용</li> <li>· 지주용 캡은 KDS3501(열간압연강관 및 강대)</li> <li>· 지주연결용 강관은 KDS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li> <li>· 지주, 캡, 지주연결용 강관에 대한 도금(용융아연도금)의 아연 부착량은 550g/m<sup>2</sup>이상</li> <li>· 원형지주는 원칙적으로 이음이 없으나 지하매설 부분에 한하여 30cm이하에서 이음</li> </ul>		
	<b>-표지판 제작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균열, 휨, 굴곡 등이 없어야함</li> <li>· 표지판 및 지주제작의 용접은 알곤 용접을 양측으로 30cm간격으로 시행</li> <li>· 캡은 지주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2점이상 점용접</li> </ul>		

# □ 하 천

## 1. 공통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가설공	<b>-공사용도로(가교)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li> <li>· 기존교량의 하류부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상류부 설치 시 세굴방지시설 설치 여부</li> <li>·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충분한 폭 확보 여부</li> </ul>		
	<b>-유수전환시설(가배수로, 가물막이) 적정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계획서 작성 및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li> <li>· 가물막이 전면의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 공법 강구 여부</li> <li>· 박기방법, 박기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 사용 여부</li> <li>· 강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었는지 여부</li> <li>· 강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맞는지 여부</li> </ul>		
	<b>-오탁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li> <li>· 오탁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기준 관리 여부</li> </ul>		
토공	<b>-흙쌓기 재료 및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할 재료의 선정시험 합격여부 (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CBR, 다짐, 투수시험)</li> <li>· 표토부, 썩은이물질, 이끼 등 부적합 재료의 함유 여부</li> <li>· 다짐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결과에 의거한 두께 등 충분한 지지력 확보 여부</li> <li>· 다짐장비의 선정, 횡수 및 포설두께 등을 정하기 위한 시험다짐 실시여부</li> <li>· 동결된 부분의 제거 및 배수관리 준수 여부</li> <li>· 기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여부</li> </ul>		
	<b>-흙깎기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력층 굴착시 기계에 의한 굴착은 기초면상 0.5m이하로 하며, 그 이하는 인력굴착으로 작업</li> <li>· 암반굴착시 발파에 의한 굴착은 시험발파 실시여부</li> <li>· 누수나 용수의 처리를 위한 집수구 설치 등 배수여부</li> <li>· 굴착토의 용용의 적정 여부 토공유용계획에 따른 공사 시행, 오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li> </ul>		
콘크리트공	<b>-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중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0%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0kg이상, 적정 슬럼프 값을 확보하는지 여부</li> <li>· 혼합수로 해수를 사용하는 여부</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콘크리트공	<b>-매스콘크리트 시공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에 의한 균열발생 여부</li> <li>·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변화 및 건조현상 발생에 대한 보호 여부</li> </ul>		
	<b>-레디믹스트콘크리트 시공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선정의 적정여부 KS인증, 자격기술자확보, 운반시간, 배출시간, 제조능력, 품질관리상태 고려</li> <li>· 타설시 재료분리 발생 여부</li> <li>· 타설전·후 품질시험 실시 여부 슬럼프, 공기량, 강도, 염화물함유량, 체적시험 등</li> </ul>		
	<b>-수중콘크리트 시공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를 정수중에 치는지와 수중에 낙하하는지 여부</li> <li>· 콘크리트 경화시까지 물의 유동 방지 여부</li> <li>· 콘크리트는 트레미나 콘크리트펌프를 사용하여 치는지 여부</li> </ul>		
블록공	<b>-블록재료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의 압축강도 (180kg/cm<sup>2</sup>) 및 흡수율(12%이하) 확보 여부 하천수면 이하 등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압축강도 상향 조정(210kg/cm<sup>2</sup>)</li> <li>· 블록의 시료 검사 적정여부 5,000개를 기본단위로 이중 6개를 채취 시험(규정에 부적합할시 모두 불합격)</li> <li>· 블록치수의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mm 이하</li> </ul>		
	<b>-블록시공의 적정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착시공 및 곡선부,이음부에 대한 모르터 채움여부</li> <li>· 굴요성, 내구성 증가를 위한 연결철봉 사용 또는 블록끼리 맞물려 시공하는지의 여부</li> <li>· 블럭시공 전 자연침하 및 다짐 실시 여부</li> <li>· 블럭시공 시 허용오차가 법선과 줄눈간격을 기준으로 ±5mm 이내인지의 여부</li> </ul>		

## 2. 하상정리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준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전 제출서류 작성 여부</li> <li>·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목록 제출 및 승인 여부</li> <li>·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승인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설작업의 적정 여부</li> <li>· 퇴적물의 양, 하도의조건 및 오니 준설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준설장비 선정 여부</li> <li>·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부표나 대나무 등으로 표시여부</li> <li>· 준설구역내 수위표(조위)설치 여부</li> <li>· 관련규정에 의한 오탁방지시설 설치 여부</li> <li>· 준설심도는 10cm로 하되, 깊이와 사면외측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li> <li>· 점질토사 - 펌프준설선, 더파기두께 0.3~0.8m(사면여유폭4m)</li> <li>· 사질토사 -그래브준설선, 더파기두께 0.3~0.6m(사면여유폭6m)</li> <li>· 공사완료 후 수심평면도 작성 여부</li> <li>· 사토장의 배출구 부분에 2차 오염발생 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니토 준설 적정 여부</li> <li>· 오니토의 1회 준설두께는 30cm 이내로 하는 등 오니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지 여부</li> <li>· 오니준설 작업의 수질오탁 현상, 수심현황 등의 상시 기록 관리 여부</li> <li>· 관련법규에 의한 폐기처리 여부</li> </ul>		

### 3. 제방축제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흙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토재료 다짐의 시방규정에 따른 적합 여부</li> <li>· 흙쌓기 구간에 대한 사전 지반정리의 적정여부</li> <li>· 흙의 다짐도는 KSF-2312의 규정에 따라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설계도서 참조)</li> <li>· 1층 다짐두께 30cm이내, 구조물 되메우기 10-20c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돋기의 적정여부</li> <li>· 더돋기는 제방마루 뿐만 아니라 전 단면에 대하여 제방 높이 및 제체의 특성에 차등 더돋기를 실시여부</li> </ul>		
제방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방 비탈면 마감의 적정여부</li> <li>· 비탈면 마감 시공시 기준틀 설치여부</li> <li style="padding-left: 20px;">설치간격(설계도서 참조) 직선부 : 20-50m</li> <li style="padding-left: 20px;">곡선부 : 5-10m</li> <li>· 비탈면에 떼 등을 식재할 경우 돌덩이(최대6cm) 제거여부</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발생, 보상·지장물이설 지연, 구조물 터파기 등 시공지연으로 우기전 제방의 단절부위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li> </ul>		

#### 4. 호안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돌망태 (개비온 메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움돌 및 철선 규격이 시방기준에 적합 여부</li> <li>· 타원형 : 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 치수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의 1/2(현장채집 2/3)보다 작은 사용</li> <li>· 사각형 : 300mm 이하, 전체 돌무게의 85% 이상이 10mm</li> <li>· 풍화된 석재의 혼입여부</li> <li>·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로 KSF2519에 적합한 석재사용 여부</li> <li>· 철선규격(아연도금) 적정여부</li> <li>타원형 : 지름 4.0mm, 뚜껑틀 4.5mm</li> <li>· 사각 : 결속선 2.2mm, 본체 2.7mm, 테두리 3.4mm</li> </ul>		
호안블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럭 시공시 곡선부, 이음부 밀착 및 모르타르 틈 메우기 적합 여부</li> <li>-이음철선의 결속상태 및 호안블럭 처짐 여부(+5c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트의 겹침폭, 겹침방향의 적정여부</li> <li>· 매트의 현장봉합은 최소20cm 이상 물흐름 방향으로 겹침 여부</li> </ul>		
배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문의 정상 작동 여부</li> <li>· 수문 유입구 및 유출구에 밀다짐공 시공 적정 여부</li> <li>· 문짝, 가이드프레임 등에 녹방지 도색 여부</li> <li>· 시공이음부 누수 발생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수문 콘크리트 타설방법 적정성 여부</li> <li>· 본체와 날개벽은 별도로 시공여부</li> <li>· 하나의 작업구획은 시공이음이 없어야함</li> <li>· 측벽콘크리트의 좌,우 대칭 시공 여부</li> <li>· 도교 및 조작대에 난간 설치 여부</li> <li>· 권양기에 시건장치 설치 여부</li> </ul>		
사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석규격의 적정여부</li> <li>· 계산된 사석의 최소안전중량이 30kg미만일 경우는 최소안전중량 준수 여부</li> <li>· 자갈 보호층의 두께는 사석층 두께의 1/2정도로 하 되 150-230mm보다 작아서는 안됨</li> <li>· 사석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게 맞추어지도록 설치 여부</li> </ul>		
배수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수통관 규격 자동문비의 적정설치 여부</li> <li>· 배수관의 직경이 <math>\phi=1,000\text{mm}</math>이상 여부</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 불량한 면정리 여부</li> <li>· 구조물 균열관리 여부</li> <li>· 구조물 접속부의 차수 적합성 여부</li> <li>· 축제후 호안공 시공지연으로 제방유실 및 구조물 접속부 세굴 여부</li> </ul>		

## 5. 하상유지시설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본체공	<p>-돌붙임공 재료 선정기준에 적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붙임용 석재의 압축강도가 1,000kg/cm<sup>2</sup>이상이고, 흡수율은 5%미만, 비중은 2.5~2.7인지 여부</li> <li>· 돌쌓기용 석재의 길이가 30~45cm인지의 여부(강도는 돌붙임용 석재와 동일)</li> </ul>		
	<p>-돌붙임공 시공의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여건에 따른 돌붙임공 시공방법 적정 여부</li> <li>급경사, 유속이 빠른경우 - 찰붙임</li> <li>완경사, 유속이 느린경우 - 메붙임</li> <li>·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발생 여부</li> </ul>		
	<p>-돌쌓기공 시공의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이나 계류부에는 자갈이나 조약돌 등을 사용하여 메쌓기를 하는지 여부</li> <li>· 기초의 부등침하 발생 여부</li> <li>·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이상 맞물리도록 시공하는지 여부</li> <li>· 배수공 필요 여부 검토</li> </ul>		
부대공	<p>-연결옹벽의 시공 적정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상유지공의 본체와 옹벽 접합부 분리 여부</li> <li>· 옹벽의 기초를 물반이와 바닥보호공보다 1m낮게 설치하는지 여부</li> <li>· 밀다짐 실시 여부</li> </ul>		

## 6. 보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보 본체공	<b>-가설공사의 적정여부</b> · 보의 규모, 종류, 공사현장의 조건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작성 여부(홍수기를 피할 것) · 지형, 기초지질, 설계조건, 굴착토의 처리방법, 전체공정 등을 고려한 굴착계획 및 굴착공법 수립 적정 여부		
	<b>-콘크리트공 시공의 적정여부</b> · 관련규정에 의한 콘크리트 배합의 적정여부 · 콘크리트의 이음매 적정 시공 여부 수평이음매-시공줄눈으로서, 1회치기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의 크기나 기초의 상태에 따라 0.5~2.0m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가로이음매 - 수축줄눈으로서, 가로방향으로 10~15m 간격으로 시공(25m까지 시공 가능) 세로이음매- 시공 및 구조면에서 고정정보의 축방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함. 10~20m 간격으로 시공		
	<b>-가동보의 상판공 시공 적정여부</b> · 수문하중으로 인한 부등침하 발생 여부 · 수문과의 사이에 수밀성 확보 여부 · 보 기둥간의 거리를 30m이하로 할 경우 연결조인트는 시공하지 않음		
바닥보호공	<b>-바닥보호공 시공의 적정여부</b> · 보호공은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조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지의 여부 · 세굴방지를 위한 매트설치 여부 · 현장치기 콘크리트 블록 사용시, 용출수 및 침투수의 배수 원활 여부		
연결조인트공	<b>-연결조인트 시공의 적정여부</b> · 차수판 재료의 적정 여부 강판, 염화비닐판, 강화고무판 · 연결채움재의 신축성 확보 여부		
보 기초공	<b>-말뚝시공의 적정여부</b> · 강재말뚝 재료의 적합성 여부 H형말뚝 : KS F 4603, 강관말뚝 : KS F 4602 요건충족 · 콘크리트 말뚝 재료의 적합성 여부 (KS F4303, KS F 4306요건 충족)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보 기초공	<b>-기초시공의 적정 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표층의 이토, 부식토 및 이물질을 제거했는지 여부</li> <li>· 사력지반위에 축조하는 경우 하중에 의한 기초지반의 부등침하와 투수에 의한 파이핑 방지공법 채택여부</li> <li>· 암반기초의 경우 그라우팅 후 검사보오링에 의한 코아 채취와 투수시험을 하여 암반의 균질화를 확인하였는지 여부</li> </ul>		
	<b>-그라우팅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입압력을 2~3kg/cm<sup>2</sup> 이하로 유지했는지 여부</li> <li>· 기타 주입작업 및 작업중의 시험 결과 관리 여부</li> </ul>		
차수벽공	<b>-차수벽공 시공의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판물반이 및 보의 연결부분을 모두 연속시공 하였는지 여부</li> <li>· 콘크리트차수벽 시공시 주위지반 교란 여부 및 되메우기 적정 여부</li> </ul>		
가동보수문공	<b>-인양식수문의 시공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 기둥단면은 유수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류관에 반원형 단면 부착 여부</li> <li>· 보 기둥에 수문틈 및 수문연결고정장치, 앵커볼트 설치 여부</li> <li>· 수문의 개폐 원활 및 수밀성 확보 여부</li> </ul>		
	<b>-개량식 수문의 시공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폐장치 설치 여부</li> <li>· 자동개폐가 가능한지,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li> </ul>		
	<b>-개폐장치 설치시 적정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재의 보관 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li> <li>· 장기보관 시 오손이나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li> <li>· 문짝, 가이드프레임 등의 부재에 녹방지용 도장처리 여부 도장의 순서 : 공장 가조립 후 초벌, 현장 조립설치 시 검사 후에 재벌칠과 마무리칠</li> <li>· 마무리 작업상태, 수밀부의 마무리정도, 문짝의 개폐조작 원활 여부 확인</li> </ul>		

## 7. 부대공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부체도로공	-보조기층 포설 여유폭 시공 여부		
	-콘크리트 포장줄눈의 적정성(평균 6m) 및 비닐 부설 여부		
가도·가교	-공사용도로(가도, 가교) 철거 적정여부		
품질시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적, 시험요원자격, 시험실 및 시험기구의 적정 여부		
기타	-제방 주위의 파이핑, 누수 등의 관리 및 제체의 파괴 우려 여부		
	-오탁 방지망설치 적정 여부 · 하천공사로 발생한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위치에 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하상에 유수소통 지장 여부		
	-상주하는 현장기술자 자격의 적정 여부		

## □ 건 축

### 1. 토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엄지말뚝 및 흙막이판	· 측압에 대한 구조계산의 적정성		
	· 엄지말뚝과 흙막이판의 시공상태 적정 여부		
	· 띠장 및 버팀대의 설치 간격과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지하 연속벽	· 파내기 구멍의 적정한 시공상태, 연속벽의 품질 관리상태 적정 여부		
어스앵커	· 앵커 상호간 간격, 각도, 길이, 부식방지조치, 인장 시험의 적정 여부		

### 2. 지정 및 기초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일반사항	·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말뚝 시험시공 적정 여부		
	· 시공 중 말뚝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설덮개 설치 여부		
	·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양생 등 적절한 조치여부		
콘크리트말뚝	·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현장관리, 시공, 시험 등의 적정 여부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상태 적정 여부		
강재말뚝	· 강재말뚝의 자재관리 및 시공 상태 적정 여부		

### 3.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철근	· 철근의 시공계획성, 자재관리,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및 균열 관리 상태의 적정 여부		
시공	· 콘크리트의 다짐, 양생,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의 적정 여부		
	· 피복두께, 표면마무리, 철근조립 간격, 겹이음 상태 등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부재	· 부재의 운반계획, 보관상태, 시공계획의 적정 여부		
시공	·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품질관리 및 균열 관리 상태의 적정 여부		
	· 부재의 현장조립 상태의 적정 여부		

### 5. 철골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재료	· 철골 부재 및 조립재 관리상태의 적정 여부		
내화피복	· 재료, 두께, 피복밀도 등 계획,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시공계획	· 철골나누기, 조립계획서 등 시공계획의 적정 여부		
시공	· 부재의 운반, 볼트체결, 용접상태의 적정 여부		

## 6. 벽돌 및 블록공사

공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및 벽돌의 규격의 적정성, 정착철물의 연결상태 적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눈 너비는 1cm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충전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눈 시공상태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는 등 일일쌓기 높이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돌면에 배관, 배선을 위한 홈파기를 할 경우 그 두께의 적정 여부 (보통 벽 두께의 1/3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적 상단부와 콘크리트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의 모르타르 충전은 조적벽 시공 후 수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 여부 (소음 및 균열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벽돌은 제품 30,000매당 1회씩 KS F 4004에 의한 품질시험상태의 적정성</li> </ul>		
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돌쌓기, 블록쌓기, 공간쌓기 등 쌓기의 시공상태 적정 여부</li> </ul>		
인방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방보는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충분한 길이 확보 여부</li> </ul>		

## 7. 기타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돌공사	· 돌공사 계획서 작성의 적정 여부		
	· 돌공사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타일공사	· 타일 나누기 등 시공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 줄눈 두께 등 타일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방수공사	· 방수공사 시공계획서 적정 여부		
	· 방수공사 시공상태 적정 여부		
지붕 및 흡통공사	· 시공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커튼월공사	· 커튼 월 나누기 등 시공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 품질관리 등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		
미장공사	· 바름 두께 계획 등 시공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 표면처리 등 시공상태 적정 여부		
창호공사	· 창호공사 시공상태 적정 여부		
도장공사	· 도장 나누기 등 시공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 1회 도장 두께 등 시공상태 적정 여부		

## □ 상·하수도

### 1. 관거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자재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li> <li>· 자재검수(KS규격품 사용원칙) 여부</li> <li>· KS자재 현장반입전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 여부</li> <li>· KS규격품이 아닌 자재 반입 전 공인검사기관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 승인 여부</li> </ul>		
굴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li> <li>· 과대굴착과 터파기 경사 유지 여부</li> <li>· 가시설(토류벽, 조립식 간이흙막이공법 등) 설치 여부</li> <li>· 가시설공 실제 설치 여부(가·감 정산)</li> <li>· 설계도서에 적합한 가시설과 폭·깊이의 적정 여부</li> <li>· 가시설공법 선정 적합 여부</li> <li>· 가시설공의 계측설치 여부 및 시험실시 여부</li> </ul>		
물푸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공법 선정 적합 여부</li> <li>·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여부</li> <li>· 물푸기일수 산정 및 시공 여부</li> <li>· 물푸기장비의 적정 여부</li> </ul>		
되메우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부사 설계반영 및 시공 여부</li> <li>· 관부사가 아닐 경우 양질토 시공 여부</li> <li>· 다짐의 방법반영 및 시공 여부</li> <li>· 관표식공 설치 반영 및 시공 여부</li> </ul>		
잔토처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해진 장소의 운반처분 여부</li> <li>· 처분지까지의 도로상황을 고려한 운반노선과 운반 차량선정 적합 여부</li> <li>· 토량환산계수 및 유용토량 적용 여부</li> </ul>		
관의기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의 선정과 시공 여부</li> <li>·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의 적합 여부</li> </ul>		
관부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의 종류, 두께등 외관검사 실시 여부</li> <li>· 관의 접합방법 적합성여부 및 시공 여부</li> <li>· 수밀시험 반영 및 시공 여부</li> <li>· 관부설후 CCTV촬영 반영 및 시공 여부</li> <li>· 설계도서에 적합한 경사도 시공 여부</li> </ul>		
관보호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력을 받는 곡관 및 T자관 이형관등에 관보호공 설치 여부</li> <li>· 하천횡단 등의 관보호공 설치 여부</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하천 횡단 및 교량 (매달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보호공 설치 여부</li> <li>· 교량매달기공의 설치 여부</li> </ul>		
관표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의 식별을 위해 관의 표시 선정 및 시공 여부</li> <li>· 하수관 색깔은 우수관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 원칙</li> </ul>		
관접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중에 따른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li> </ul>		
물 받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물받이, 오수받이 등의 적합성 및 설치 여부</li> </ul>		
맨 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홀의 간격, 수밀성, 크기 및 규격 등의 적정 여부</li> <li>· 맨홀의 수밀성 여부 확인</li> <li>· 맨홀내 사다리 및 잠금장치 등의 설치 여부</li> </ul>		
수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경 800m/m 미만의 오수관과 합류식관 관의 수밀 검사 반영 및 시행 여부</li> <li>· 관경 800m/m 이상의 수밀검사반영 및 시공 여부</li> </ul>		

## 2. 펌프장 및 정수장, 하수처리장 공사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공사표준시방 및 관거공사 굴착공에 따르며 굴착 방법의 적정 여부</li> <li>· 지반의 토질, 지하수상태, 주변지반변동 등의 반영 및 적정 여부</li> </ul>		
되메우기 및 흙쌓기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되메우기흙의 적합 여부 및 시공 여부</li> <li>· 되메우기흙의 다짐방법 반영 및 적정 여부</li> <li>· 되메우기흙의 유용 여부</li> <li>· 사토의 방법 및 반영과 시공 여부</li> </ul>		
기 초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 선정의 적합 및 반영 여부</li> <li>· 기초공의 각종시험방법 반영 및 시공 여부</li> <li>· 얇은 기초, 말뚝기초, 현장타설 말뚝기초, 심초 말뚝기초 등</li> </ul>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사지, 침전지, 표기조, 농축조, 소화조 등은 반드시 수밀성이 있고 부식에 견딜수 있는 구조체의 반영 및 적합 여부</li> <li>· 선정된 공법의 물질수지계산, 수리용량계산 등의 반영 및 적합여부</li> <li>· 동바리공, 비계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은 개별공종에 따른 점검</li> </ul>		

공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건축,전기 기계설비공	· 각 해당공사의 지방규정 반영 및 시공 여부		
방 수 공	· 선정방수공의 적합성 및 시공 여부 · 불필요한 구조물의 방수반영 및 시공 여부 · 아스팔트 방수공 · 시트방수공 · 모르타방수공 · 도막방수공 · 실링방수공		
도 장 공	· 도장방법의 적합성 및 반영여부와 실제시공 여부 · 일반도장, 강재도장		
조 경 공	· 조경수의 선정 적합성 및 시공 여부 · 잔디붙임공, 종자뿌어붙임공, 수목식재 등		
추 진 공	· 추진공법 선정의 적합성 및 시공 여부 · 추진구경 결정 및 위치선정의 적정성 · 추진연장 및 추진장비의 적정 여부		
시 운 전	· 시운전기간의 적정 여부 · 시운전요원의 적정 여부 · 시운전 약품의 적정 여부 · 시험항목의 적정 여부		

#### □ 기타공사(항만·어항시설 등)

- 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시공(공정)단계별로 공통적인 사항은 타 공사에 준하여 점검 실시
- 전문적인 사항은 공사추진 내용에 따라 관련 시설기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점검 실시





## **벌점제도 운영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 1. 건설기술 진흥법

□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

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1. 10.>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6. 25.]

□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별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별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별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별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별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 **제87조의3(별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별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별점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별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별점을 부과한 사유·근거와 별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③ 별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별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3. 1. 1.] 제3호, 제4호

###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별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shot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 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구분	주요 구조부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록,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배수구조물·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

- 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타. "건설 기계·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거. "보수·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2. 별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별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3. 별점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별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별점으로 한다.

나. 합산별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별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4. 별점 적용기준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별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별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합산별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별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 5. 별점 측정기준

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m <sup>2</sup>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	3

	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1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1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3 2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9)	<p>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p> <p>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p> <p>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p>	<p>1</p> <p>0.5</p>
10)	<p>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p> <p>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3</p> <p>2</p>
11)	<p>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p> <p>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p>	<p>3</p> <p>3</p> <p>2</p>
12)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p> <p>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 <p>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p>	<p>2</p> <p>1</p>
13)	<p>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p> <p>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p> <p>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p>	<p>3</p> <p>2</p> <p>1</p>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2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3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합사항을 방치한 경우	3 2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1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1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0.5
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3

	<p>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 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p>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p>	2
5)	<p>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p> <p>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p> <p>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2 1 0.5
6)	<p>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p> <p>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p> <p>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2 1 0.5
7)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p> <p>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3 2

	<p>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1</p> <p>0.5</p>
8)	<p>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p> <p>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p> <p>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p> <p>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p>	<p>2</p> <p>1</p> <p>0.5</p>
9)	<p>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p> <p>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p>0.5</p>
10)	<p>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p> <p>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11)	<p>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p> <p>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p> <p>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p>	<p>2</p> <p>2</p>
12)	<p>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p>	

	<p>자만 해당한다)</p> <p>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p> <p>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p>	<p>2</p> <p>1</p>
13)	<p>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p> <p>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2</p> <p>1</p>
14)	<p>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p> <p>가)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p> <p>나)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15)	<p>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p> <p>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p>	<p>3</p> <p>2</p>
16)	<p>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p> <p>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p> <p>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 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p>	<p>1</p> <p>0.5</p>
17)	<p>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p>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3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기술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p>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p> <p>나) 같은 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p>	1
10)	<p>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p> <p>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p> <p>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2 0.5
11)	<p>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p> <p>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p>	3 2 1
12)	<p>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p>	1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별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별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별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3)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 6. 벌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 요령**



## 현장점검 및 조치사항 요약표

확인·점검사항	조치사항	비고
<b>1. 직접시공 관련사항</b>		
① 직접시공 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검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② 공동도급 이행사항 위반	·발주자는 처분권자에게 부정당제재 요청	
<b>2. 하도급 제한 관련사항</b>		
① 일괄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② 동일 업종간 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③ 재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④ 무자격자 하도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b>3. 기타</b>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	
③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④ 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가 직접 지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⑤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⑥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⑦ 건설공사정보의 전자적 통보	·기재사항 오류시 수정요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⑧ 기성실적증명 발급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발급	

## 확인점검사항 및 조치요령

### 1. 직접시공 관련사항(건설산업기본법)

① 직접시공 불이행(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 【현행규정】

○ 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제1항, 영 제30조의2제2항)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   |
|---|
|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
|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

○ 다만,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해 발주자가 승낙하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부분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영 제30조의2제3항)

○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전문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1건 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면제(법 제28조의2제2항, 영 제30조의2제4항)

\* 직접시공계획 통보시에는 직접 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 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제28조의2제3항)

**【직접시공의 범위 및 산정방법】**

- (범 위) 정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것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FAQ, '08.12)
- (산정방법)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
  - 직접시공과 관련된 간접비(공과잡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 수급인이 자재나 장비를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금액에서 제외

<예시> 도급금액이 약 20억원인 택지조성 공사중 장비임대 비용이 4.5억원, 직접시공부분이 약 6.5억원, 하도급부분이 약 9.4억원인 경우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배수로 등	170,000,000	토공 및 부대공종	750,000,000
U형관 자재구입	350,000,000		
소 계	520,000,000	소 계	750,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17,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23,000,000
⑧ 일반관리비(5.5%)	29,535,000	⑧ 일반관리비(5.5%)	42,515,000
⑨ 이윤(15%)	84,980,250	⑨ 이윤(15%)	122,327,250
		<b>수급인이 제공한 장비임차비</b>	450,000,000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651,515,250	⑩ 하도급 금액 합계	1,387,842,250

##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b>30일</b>이내에 발주자에게 <b>직접시공계획을</b> 통보하였는지</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li> <li>2.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amp;공사기간 30일 이내</li> </ol>	<p>➔ 발주자는 <b>도급계약 해지가</b>능 (법 제28조의2제3항)</p>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b> 통보 - <b>500만원이하의 과태료</b> 부과 (법 제99조제4호, 영 별표7)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p>
<p>②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b>도급금액에 따른 비율대로</b> 직접시공 하였는지 여부</p> <p>- 직접시공 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비교하여 직접시공 충족여부 검토</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의 서면 승낙</li> <li>2.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li> </ol>	<p>➔ 발주자는 <b>도급계약 해지가</b>능 (법 제28조의2제3항)</p>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b> 통보 - <b>6개월이하의 영업정지</b> 또는 <b>1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b> 부과 (법 제82조제2항제2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6~24%</p>

## 【FAQ】

■ 최초 도급계약시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5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된 경우와 최초 도급계약시 5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된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되는지?

➔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이 되었다더라도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더라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도급금액 50억원에는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 도급금액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됨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5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바, 총공사부기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음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 할 부분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공동도급(구성원 3인, 지분율 50:30:20)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 직접시공 의무는 1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직접시공 비율을 충족하면 될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라도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접시공의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됨

■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 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중 직접시공 공종에는 자기 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영시공하는 공종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안됨
  -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 공종에서 제외하고,
  -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예정)공종 금액에 별도로 기재하여 직접시공 금액 합계액과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함

■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건설업자가 지급해주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직접시공부분에 포함되는지?

-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자재구입 또는 장비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대표자에게만 부과되는지?

-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대표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임

② 공동도급계약이행 사항 위반(국가계약법 제27조, 영 제76조, 시행규칙 7조)

【현행규정】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도급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사유에 해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6.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개월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3개월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개월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개월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개월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에 참여조차 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이 때의 제한조치는 그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모두에게 해당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공동계약에서 정한 <b>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b></p>	<p>➔ 발주자는 <b>처분권자*에게 부정당제재 요청</b></p> <p>*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p> <p>- <b>1~3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b></p> <p>(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p>

## 【FAQ】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여부?

➔ 계약이행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 되면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분담시공 가능 여부 및 출자비율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재 가능여부?

➔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시공분담 및 시공시기 등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가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을 것임. 출자비율의 변경은 국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적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임

## 2. 하도급 제한 관련사항

① 일괄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 【현행규정】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말함

\* 부대공사의 범위(영 제21조제1항)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1항 단서,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1.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법 제29조제5항, 영 제32조제1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b>30일</b>이내 발주자에게 <b>하도급계약통보</b>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li> <li>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 통보</b></p> <p>㉠ <b>거짓으로 통보한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6개월</b>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b>1억원</b>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li> <li>*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li> </ul> <p>㉡ <b>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00만원</b>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li> <li>*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li> </ul>
<p>② 영 제2 v1조제1항에 따른 <b>부대공사 외 나머지를 전부 하도급</b>하였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li> </ul>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li> <li>2.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협력업자 2인 이상에게 하도급 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 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년</b>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 금액의 <b>30/100</b>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li> <li>* 1인에게 일괄하도급(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8~30%)</li> <li>* 2인 이상에게 일괄하도급(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6~24%)</li> </ul> <p>➔ <b>관할 경찰서에 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년</b>이하의 징역 또는 <b>3천만원</b>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4호)</li> </ul>

**②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2항)**

**【현행규정】**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동일업종간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2항 단서)**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영 제32조제1항)

###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b>30일 이내</b>에 발주자에게 <b>하도급계약통보</b>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li> <li>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 통보</b></p> <p>㉠ <b>거짓으로 통보한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li> <li>*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li> </ul> <p>㉡ <b>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00만원이하</b>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li> <li>*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li> </ul>
<p>② 원도급자가 <b>동일한 업종</b>의 하도급자와 <b>하도급계약을 체결</b>하였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는지 확인</li> </ul>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 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년이하</b>의 영업정지 또는 <b>위반한 도급공사 금액의 30/100이하</b>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li> <li>*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4~16%)</li> </ul> <p>➡ <b>관할 경찰서에 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년이하</b>의 징역 또는 <b>3천만원이하</b>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li> </ul>

### ③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제25조의6)

#### 【현행규정】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25조의6)

-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시행규칙 제25조의6)을 갖추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쉘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법 제29조제4항, 영 제32조제1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b>30일</b>이내에 발주자에게 <b>하도급(재하도급) 계약통보 또는 재하도급 승낙통보</b>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에 한함)</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li> <li>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하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p> <p>㉠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li> <li>*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li> </ul> <p>㉡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li> <li>*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li> </ul>
<p>② 하도급자가 <b>재하도급을 하였는지</b> 여부</p> <p>☞ 예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2. 하도급금액의 20% 이내에 3. 특수성.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면서 4. 재하수급인에게 직불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2.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합의서를 작성한 경우</li> </ol>	<p>➡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li> <li>*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재하도급금액대비 4~16%</li> </ul> <p>➡ 관할 경찰서에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li> </ul>

**④ 무자격자 하도급(법 제9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현행규정】**

-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

○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위장직영을 통해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고, 무등록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li> <li>- 자재·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 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li> <li>- 하도급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지</li> </ul> <p>ex)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포장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p>	<p>㉠ 무등록자 또는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li>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li> <li>*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6~24%</li> <li>➡ 관할 경찰서에 고발</li> <li>·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li> </ul>
<p>②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았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지</li> </ul> <p>ex)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포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li> <li>·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1호, 영 별표6)</li> <li>* 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8~30%</li> </ul>
<p>③ 건설업자 명의 또는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가 무등록자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 명의로 시공하였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li> <li>·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를 대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소등록(법 제83조제5호)</li> </ul> </li> <li>·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6조)</li> </ul> </li> </ul>

### 3. 기타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확인(법 제34조제7항, 제68조의3제6항)

**【현행규정】**

○ '16.8.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예방
- (확인대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p> <p>☞ 예외</p> <p>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시행규칙 제28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li> <li>-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li> </ul> <p>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li> <li>-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li> <li>-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li> </ul>	<p>➡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p> <p>① <b>시정명령</b>(법 제81조제4호)</p> <p>② <b>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b>(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p> <p>*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p> <p>☞ <b>최근 2년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에 따라 처분</b>하고 그 외는 ①에 따라 처분.</p> <p>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②에 따라 처분 가능</p>

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법 제31조,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현행규정】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심사 가능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 발주자는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가능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
  -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에 미달 또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에 미달하는지 여부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30호, 2019.6.27)에 따라 심사 -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③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법 제31조의2, 영 제34조의2)

【현행규정】

-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100억원이상 종합심사대상 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 제출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식 등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획서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하도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7호, 영 별표7) * 1차, 2차, 3차 모두 3백만원
② 하도급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한 감액을 하는지 여부 -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급통보용으로만 활용 - 하도급계획서와 다르게 저가하도급 강요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하도급계약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 *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

④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제34조의2·제35조, 영 제34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현행규정】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 담당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또는 해지한 경우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
  -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 요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16.8.4 시행)
-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직접지급 규정을 준용(법 제32조제4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b>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b> 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b>시정명령</b> (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b>500만원 이하의 과태료</b> (법 제99조제8호, 영 별표7) * 1차 3백만원, 2차 및 3차 5백만원 ㉡ <b>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b> (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 *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 ☞ <b>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b> 하고 그 외는 ㉠에 따라 처분.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에 따라 처분 가능 ➔ 발주자는 <b>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발생 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b>
② 하수급인에게 <b>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b> 하였는지 여부 ☞ 예외 1.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2.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3. 2개 이상 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인 경우(하도급법)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b> 하였는지 여부	
④ 수급인이 지급받은 <b>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지급</b> 하였는지 여부	

⑤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법 제22조제7항, 영 제26조의2)

**【현행규정】**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4대사회 보험료를 <b>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b> 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b>시정명령</b> (법 제81조제4호) ㉡ <b>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b> (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 *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 ☞ <b>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b> 하고 그 외는 ㉠에 따라 처분.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에 따라 처분 가능

⑥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0조의2 및 제31조)

【현행규정】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

-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배치 면제**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현장에 배치 가능**

1. 공사에정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개 현장, 3억원 미만 3개 현장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함**

-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 발주자는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요청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건설현장에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예외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시정명령(법 제81조제7호)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b>6개월이하 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b> (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 별표6) * 1차 2개월, 2차, 3차는 3개월
②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자 승낙여부 확인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b>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b> (법 제97조제4호)
③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 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b>50만원이하의 과태료</b> (법 제100조제2호, 영 별표7) * 1차, 2차, 3차 모두 30만원

**7] 건설공사정보의 전자적 통보(법 제22조제6항, 영 제26조)**

**【현행규정】**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① **통보대상**

-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하도급공사 : 1억원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통보기한** : 계약(변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통보내용** :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p>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기한내 <b>건설공사정보를 통보하는지</b>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b>실효성 확보</b>를 위해서는 <b>발주자의 주기적 확인</b>이 반드시 필요</li> <li>- 원·하도급자가 통보한 건설공사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여 <b>법령위반여부도 확인</b></li> </ul>	<p>➔ 해당 건설업자의 <b>등록관청에 통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정명령</b>(법 제81조제3호)</li> <li>·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00만원 이하</b>의 과태료(법 제99조제3호, 영 별표7)</li> <li>*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4백만원</li> </ul> </li> </ul>
<p>② <b>통보내용이 정확한지</b> 여부</p>	<p>➔ <b>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요구</b></p> <p>➔ <b>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b></p>

⑧ **기성실적증명 발급(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현행규정】**

○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시공능력평가기관(건설관련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

**【점검 및 조치사항】**

-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 발주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
- 시공능력평가기관에서 기성실적에 대한 확인·조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회신

# 부록 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8-13 조례 제 3443호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8-03 조례 제 433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017.8.3.>
3. “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7.8.3.>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별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신설 2017.8.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2장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8조에 따라 부실시공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의 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2017.8.3.>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도지사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제7조(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시공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7.8.3.>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7.8.3.>

**제9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 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9조·제10조·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실시공 여부를 결정할 경우 조사 및 자문
2. 별표 1에 따른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범위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3. 그 밖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발주청의 부실시공 여부 결정의 조사·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에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장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부실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건설공사 중 도급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017.8.3.>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2017.8.3.>
4. 삭제<2017.8.3.>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실시공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별지 서식]

부실시공 신고서 (제8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별표1]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부실시공 등    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 상 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1,0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6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2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록 2. 경상남도 건설공사 점검반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04-12-09 예규 제 1058호

(일부개정) 2007-07-01 예규 제 1119호

(일부개정) 2011-03-10 예규 제 195호

(일부개정) 2014-09-01 예규 제 2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집행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반을 운영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대상건설공사 <개정 1998.11.12, 2004.12.9>)** 건설공사 점검반이 점검하는 대상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0>

1.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인가 및 승인한 건설공사
3. 도 및 시·군 투자기관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04.12.9>

**제3조(점검항목)**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수행의 적정한 수행여부
3. 품질관리 상태 및 품질시험 적정성 여부
4. 책임감리 및 공사감독 적정성
5. 공사관리 실태

**제4조(조직)** 총지휘는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총괄책임자는 담당과장이 되며, 총괄반장은 담당사무관이 되고 총괄반장 밑에 실무반을 둔다. <개정

1998.11.12, 2004.12.9, 2007.07.01, 2011.03.10>

**제5조(운영)** 점검반은 연중 건설공사 현장을 검사한다. <개정 1998.11.12, 2004.12.9>

**제6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도지사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외에 따른 점검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12.9, 2011.03.10>

② 건설공사 현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점검요원을 두며 점검요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9, 2011.03.10>

**제7조(직무와 책임)** ① 점검요원은 제2조에서 정한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증표를 소지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9, 2011.03.10>

② 점검요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1.03.10>

**제8조(점검결과 처리)** 점검요원의 점검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외에는 문서로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예규 제209호, 2014.9.1>(경상남도 예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예규)

이 예규는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b>점 검 요 원 증</b>	
<b>NO.</b>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b>증 명 사 진 (3×4)</b>
<p>위 사람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점검요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남도지사 (인)</p>	

9cm

6cm

(뒤 면)

<b>주 의</b>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증명은 경상남도건설공사 점검요원에 한하여 휴대한다.</li><li>2. 본증을 소지한자가 건설현장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li><li>3. 이 증명은 전출시는 반납하여야 한다.</li><li>4.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li></ol>

[별지 제2호 서식]

## 건설공사현장 점검표

점검일시 20 . .

[발주청 : ]

일련번호		공 사 명		
위 치		공 사 비	백만원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시공회사		건설사업 관리회사		
지 적 내 용	조 치 지 시		조치구분	
점 검 자	소속	확 인 자	건설사업관리 (감독)자	(서명)
	직, 성명		현장대리인	(서명)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설명서 발행 연혁 -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2년 6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설명서 』 : 2013년 5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5년 1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6년 1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7년 2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8년 2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19년 2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20년 2월
-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 2021년 2월

## 건설공사 현장 지도·점검 매뉴얼

---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처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 211-2911  
인      쇄

**부패척결과 고강도 청렴대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시대를 열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비리제보  
080-211-0999**



**경 상 남 도  
GYEONGNAM**